

제439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정기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9월8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1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1

(11시01분 개의)

○소위원장 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朴芝源 위원 위원장님, 저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거 하고 심사하기 전에……

○朴芝源 위원 예.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11시02분)

○소위원장 유상범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난 회의 때의 발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셔서 타이머는 없으나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결산소위에서 과기부 소관 한국고등과학원 시설 지원(R&D) 사업 관련해서 제가 시정요구사항 심사를 요청하면서 해당 지역구에 계신 안규백 의원님 요청사항이라고 잘못 발언을 했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안규백 의원님께서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다만 그 취지가, 허준이 기념관 건립 위치가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이다 보니 해당 지역 현안으로, 착오로 아마 담당자가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류를 요청했던 사유는 해당 사업이 수학 연구 중심 공간 마련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인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정정하고 결산소소위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주 콤팩트하게 간단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재정경제부2차관 허장입니다.

○재정경제부기획조정실장 김후진 재정경제부 기조실장 김후진입니다.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허승철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허승철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세 분만 들어오셨나요?

○재정경제부국고총괄과장 정동영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장 정동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재정경제부에 대해서는 총 2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7건입니다.

6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국방부 미지급 건에 대해서, 동 건에 대해서는 감사요구안도 제기되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말 국방 분야 예산 1조 3038억 원 지출 결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국고금 부족으로 인해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입 예산 전망, 연말 자금계획 수립·조정,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공자기금 활용, 국방 분야 예산의 이월 한도 결정 등 연말 국방 분야 예산의 미지급과 관련된 전 과정을 조사하는 한편 조사결과 책임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27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연말 국방비 미지급에 대한 감사요구 사안이 있습니다.

감사요구 사유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미지급된 국방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을 통상적인 이월 집행이라고 설명하는 등 국방비 미지급의 발생원인·대응방안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연말 국방비 미지급 사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작년 연말 국방비 관련 국고자금 배정과 집행과정에서 미진함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비 일부가 부처에서 지출 의결되었음에도 미지급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간단하게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등 세외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사실상 조세수입은 예상보다 한 1.8조 정도 더 들어왔는데 세외수입에서, NXC 소위 넥슨의 주식을 파는 3.7조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뺄수가 나면서 세외수입에서 3.9조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한 2.1조 정도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좀 마이너스가 난 반면에 집행실적은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집행이 워낙 빠르게 돼서 집행률이 98.5%로서 예년에 비해서 한 2.2% 정도 높은 수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에 이렇게 양쪽에서 좀 갭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반면에 관행적으로 보통 12월에 집행이 집중된 국방부와 방사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당시에 12월 집행률이, 12월 예산에서 집행하는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양쪽에 이렇게 미스매치가 나다 보니까 집행이 잘 돼서 돈은 거의 나갔는데 들어오는 거는 조금 적고 그래서 여유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쪽 국방부 쪽, 국방부와 방사청 쪽에서 집행소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일어나서 저희가 이런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미지급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그 다음 해, 1.3조 정도 미지급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파악하자마자 이걸 그 다음 해 13월의 세입이라 그래 가지고 25년도 세입이 다음 해 D+2년까지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이걸 급히 13월의 세입을 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 1월 9일 날 저희가 1.5조 정도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1.3조 정도의 미집행 금액을 전부 다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로 돼 있는데 이게 뭔가 예측이나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징계를 주의나 시정 정도로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차관님이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국방위에서 저희 임종덕 위원님이 그때 발제를 하시고 하셨는데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어요. 재정부는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 이렇게 밝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 미지급에 따라서 6억 7000만 원 수준의 지연이자 발생하고 그리고 2025년 예산 중에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한 육칠천 억 원 정도 강제 불용되고 그래서 이 월됐다는 건데 이게 루틴한 그게 아니…… 그러니까 NXC 물납주식이 매각이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어요. 이게 통상적인 것도 아니고 매각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지 이런 거는 누구나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마치 그냥 거래가 될 거를 상정을 해 가지고 탄 데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국방부 및 방사청 소관 사업에 지출을 못 했다는 건 이걸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님이 정계 시정요구를 하신 걸로, 저는 마땅한 요구를 하신 걸로 생각되고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통상적인 이월 집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통상적인 게 아닌데 통상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과연 통상적인지 아닌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좀 밝혀야 되겠다는 데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잠깐만요. 차관님께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한 입장은 안 밝히셔 가지고……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저희는 지금 감사원 감사요구도 현재로서는 좀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종욱 위원 차관님이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그건 다 어떤 사정 설명, 핑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별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는 과정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결과로 책임지는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이종욱 위원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연말에 국고 지급불능 사태에 빠졌고 그 뒤에 이월 등을 통해서 일부 집행을 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팩트가 틀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어쨌든 일부 세수 부족이 발생을 했지만 통상에 비하면 세수 부족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규모고 30조, 50조 발생한 것도 다 막았는데 지금 2조 1000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연말에 집행 실적이 98.5%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사실상 무리한 밀어내기도 많았어요, 정부가 연말에 한 푼이라도 더 집행하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부 내에서 그런 조율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작동이 안 됐고 총체적인 시스템 실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통상적인 이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1조 3000억을, 1조 5000억을 1월 9일 날 배정을 해서 1조 3000억이 다 집행됐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월한 금액을 준 거지요, 국방부에. 그중에 일부가, 1조 3000억 중에 일부가 이월이라는 형식으로 살아남았고 전체 1조 3000억 중에 한 6000억 정도는 예정처에서 불용된 걸로 최종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집행됐다, 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도 틀린 말씀이고 그리고 전년도에 미지급된 게 그다음 해 1월 9일 날 집행되면 그게 해결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문제를 국민들한테 다 해결됐으니까 그냥 공무원들 조금 실수한 거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이거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연말에 25년도 회계와 26년도 회계 경계선을 잘 하라고 재정경제부 국고국에 온갖 권력과 권한을 다 줬지 않습니까? 차입하는 권한, 여유자금 운용하는 권한 온갖 권한을 다 줬는데 그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고 국가 기능 실패였다.

그래서 이 일은 지금 우리 결산 가지고 며칠째, 몇 주째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적사항이고 감사원 입장에서 다른 거는 다 넘어가더라도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다시 재발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던 거고 저도 그쪽 일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후배들이고 한테 마음은 아프지만 이거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고 이 일 만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배준영 위원 제가 잠깐……

○소위원장 유상범 잠깐만.

감사원 사무총장님, 감사원 감사요구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실 게 있나요? 불편하면 안 해도 되고.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지난 5월 말에 보고드린 국가 결산 보고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수치 확인에 급급해서 그때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만 저희가 6월 달에 국가 결산검사 후속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검토를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드리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럴 시간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이 판단을 위해서 일단 자료는 배포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의 입장은,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결론은, 사실 이 내용은 간단한 사항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금 배정을 기재부에서, 한은의 통합계정이 있는데 카드 한도를 열어 주듯이 각 부처별 월별로 한도를 열어 줍니다. 월별 한도를 열어 주고 그 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방사청이 연말에 한도를 열어 준 것, 1.8조밖에 열어 주지 않았는데 3.3조를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방사청의 입장은 뭐였냐면 자기가 1월부터 11월까지 못 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12월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8조 플러스 그 못 쓴 것 해서 3.3조를 썼는데, 지출결의를 했는데 국고를 통합·관리하는 재정부에서는 1.8조만 한도를 줬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은 거의 비슷한 한도 내에서만 지출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청에서 3.3조나 지출결의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국방부가 한 5000억을 못 썼고 방사청이 한 8000억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왜 이렇게 발생했냐면, 매달 발생하는 그 한도를 못 쓰면 회수를 합니다. 기재부가 회수를 하는데 국방부와 방사청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이라는 디브레인과 별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연계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한도가 남아 있는지 어떤지 모른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이번 우리 조사 결과 이후에 8월 말까지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사청이 자금 배정을 받은 한도보다 추가로 지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발생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 감사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방사청에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무슨 잘못이 있냐면 한도를 매달 열어 준 것, 쓰지 않았으면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 방사청 시스템이 디브레인과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게 회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정적으로 이 사항은, 결론적으로는 시스템 간의 불연계 그리고 그 한

도를 초과해서 방사청 담당자들이 잘못 지출한 데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원인이 방사청에 있다고 이렇게 감사원은 또 평가를 하네.

지금 감사원의 의견이 우리가 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얘기해서 이견 조금 더, 일단 부처 입장은 반대 의견이고 감사원에서 우리가 했던 부분은 재경부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야 하는데 방사청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해 버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거랑, 엉뚱한 얘기가 나왔어요.

보류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조금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조금 다른 입장을 말씀하셔서 좀 당혹스럽긴 한데 결국은 어떤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총체적인 책임은 재경부가 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금 배정 한도를 연말까지 실제적으로 조정했어야지요. 자금 배정 한도 수정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월중에도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계속 보고 수입·지출 체크하면서 각 부처별로 ‘너그 얼마 남았다’, ‘얼마 했다’ 이것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작업을 안 했다는 걸로 들리고 방사청에서 일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작년에 세수결손이 2조 1000밖에 발생 안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방사청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작년에 특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책임은 이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것도 핑계다. 저는 이것도 핑계라고 봐요. 부처 내 핑계 대지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보라고요. 누구 잘못이든 간에 어쨌든 연말에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져야지요. 그게 방사청 책임이니까 재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원도 똑바로 감사하십시오. 한쪽 부처 손 들어주지 말고 국민 대 정부 입장에서 보라고요. 그다음에 갈라 놓고, 누구 부처 책임인가는 그 뒤에 실무적인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저희가 일차적으로 사전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릴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와 다른 시각을 갑자기 얘기해 버리니까……

○정태호 위원 하여튼 시정요구유형이 징계 이렇게 돼 있고 또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징계는 그야말로 불법이거나 부당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은 사실 아까 감사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미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다 드러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나 부당함 이런 걸로 해서 징계로 갈 사안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 지출과 관리에 있어서 재경부의 책임 부분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국민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누군가의 어떤 책임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도 초기에 사전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하셨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보류를 시켜서 좀 더 조사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

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일단 부처의 반대의견 또 민주당 여당에서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일단 보류를 결정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에 배준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원의 말씀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재정부 차관이 분명히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라는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해서 근원적인 원인 제공을 했더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지연이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 혈세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결론을 내시겠지만 그렇게 가볍게 다룰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불법·부당이라는, 부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성실 의무, 주의 의무, 그다음에 직무 태만하지 않아야 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단지 부당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큰 잘못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결산 감사하는 데,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짧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NXC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NXC는 사실 23년도에 저희가 4.7조 원 전체를 팔려고 한 번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저희가 주관사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문사도 선정을 해 가지고, 한 거의 1년 가까이 준비를 해 가지고 그 4.7조가 어렵기 때문에 3.7조 정도만 팔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NXC가 넥슨사의 모회사인데 그 당시에 게임산업이 잘돼 가지고 저희가 뭔가 하려고 의욕적으로 해서 사상 최초로 자문사로 선정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준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정부 측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누가 그것까지 노력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고관리국에서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발생했으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 행정이나 어디에서 책임주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연번 6번 외국환평형기금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한국투자공사가 기금으로부터 외화재원을 위탁받아 운용하며 발생한 수익을 2022년 60억 달러, 2025년 30억 달러 회수하였는데 외화재원 운용수익의 활용에 있어 국회 보고 등의 절차가 없어 임의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자산과 운용수익이 객관적·중립적 기준 없이 회수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적정성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기본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환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회수하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객관적·중립적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습니다. 이것이 외환보유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점을,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사전에 외환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여기서 주의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마는 원안에서…… 객관적·중립적 기준 없이 회수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적정성 검토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사실상 외국환평형기금의 적응성이나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기능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수준에 갑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뒤에 문구를 ‘외평기금의 KIC 위탁자산·운용수익 회수 시 KIC 법 및 규정을 준수할 것’ 정도로 바꿔 주시면 저희가 이 지적하신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유념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게 국민연금기금이나 무슨 기금처럼 독립적 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관리해야 될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말씀대로 필요할 때마다 외환 관리를 위해서 즉시성도 중요하고 한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처에서 저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부처가 말한 정도의 문구로 해서 제도개선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재정부에서 얘기한 문구대로 정리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연번 8번 국고금 운용수익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2항은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17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와 상이한 측면이 있고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이 문제에 있어서는 취지는, 예산총계주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마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고금 운용수익은 당해연도 세입 여건이나 금리 이런 데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20년에는 254억 정도였는데 23년에는 2762억이 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을 높이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령인 국고금 관리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출예산의 활용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계정의 자금 조달 비용 및 이자 지급이라든지 국고금 운용과 관련된 경비 지급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금 운용의 탄력적인 범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8번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예산 계상 필요, 이 안을 가능하면 삭제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어차피 법에 있는 거니까. 아니면 정 안 되면 제도개선이나……

그리고 또 이거를 남길 경우에도 수정안을 제 생각에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의 원안을 보면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라고 이미 개정을 집어넣고 있는데 사실 이 개정은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한다면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것’ 이 정도로, 제도개선 정도로 집어넣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당초 법의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가인 이종욱 위원님 의견 듣고,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듣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거는 법 개정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고금 운용을 세입 세출예산 안으로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산 심의하면서 이게 큰 이슈이긴 한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유지해 왔던 그런 포지션을 바꾸는 건데, 법 개정사항 아닙니까? 이거를 결산에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간사님, 민주당 위원님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태호 위원 그래도 김교홍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검토는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유상범 보류……

○이종욱 위원 검토 많이 했어요.

○정태호 위원 제도개선 이렇게 하면……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정태호 간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차관계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재정경제부는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문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삭제하는 것이 그렇게…… 또 각 의원실에서의 생각이 있고 또 상임위원장까지 거친 다선 의원이니깐 그 부분 고려해서 제도개선 이렇게 정

리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13페이지입니다.

○朴芝源 위원 재정부 7번은 안 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연번 7번은 안 하고 넘어가나요?

○전문위원 주성훈 연번 7번은 정부 측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수용을 다시 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박지원 위원님,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지요?

○朴芝源 위원 예,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전문위원 주성훈 연번 15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어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025년 1·2회 추경을 통해 411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1098억 원이 이용되었고 6571억 원이 불용되는 등 상당수가 집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추경 편성에 있어 집행 가능성을 정교하게 고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 최소화를 위한 재정 운용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28페이지, 잠깐만요.

똑같은데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똑같은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사항이 ‘기획예산처는’ 이렇게 주어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기획예산처는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했습니까?

○전문위원 주성훈 여기에도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해야 되네요.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일단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5년도 예산은 24년도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모든 변수가. 그래서 사실상 금리가 3.4%로 되고 실제 그걸 집행할 때 2.8%가 돼서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사실상 24년 1월에서 7월까지 국고채 금리가 3.33%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산을 짤 당시에 있어서 3.4%라는 거는 그렇게 높은 금리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차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경 편성 시 실질금리가 편성금리보다 하향해서 더 조정해야 된다

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이것을 3.4%에서 3.0%로 하향 조정을 그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자 예수금리가 2.7~2.9 정도여서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그 이하로 하향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은 일시차입 이자상환 문제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보통, 워낙 25년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상반기에 0.4%, 하반기에 1.8%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신속집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가 60%였는데 이거를 63.3%까지 신속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은 일시차입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자상환이 늘어난 점, 이런 정부의 정책 집행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 문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고 고치고 이러할 문제이긴 하고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정부 입장에서 제한했습니다마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주의도 계속 주의를 할 거니까 받아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구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구를 보면 원안에서 ‘관련자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관련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관련자보다는 제 생각에는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라는 문구를 빼서 그냥 ‘재정 운용이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정도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이게 결국은 추경에서 이자 추가 편성해 놓고 열흘 만에 718억 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예수 이자율을 3.4%로 예측하는 게 당시 상황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국채 이자가 상당 부분 불용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조정하지 않고 결국 타 사업으로 1098억을 이용했고 그리고 6570억을 불용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7668억만큼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가채무 확대해 가지고, 이자가 3%인데 230억 원을 결국은 국민에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국민한테 그 부담을 주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엄중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주의는 수용을 하셨는데 관련자에 대해서는 빼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재정부는 그러면 주의는 받으신다는 말씀이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이종욱 위원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금리도 맞추기도 힘들고 중간에 하는 그런 점은 있지만 또 결과론적으로도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부처에서 문구 수정해서 주의 받는다고 하니까 저는 양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시정요구유형 자체는 논란이 없고 다만 시정요구 문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이 사항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정하되 문구와 관련된 부분은 배준영 위원 등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류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위원장님, 기획예산처도 같은 지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주의는 수용하되 재정부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문구는 같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은 상정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할 때 그때 바로 결론 내 버릴게요. 상정 안 됐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은 14페이지, 연번 16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대외기금으로 전출금이고요.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추경예산 291억 원 대비 823.7% 증가한 2688억 원이며 이는 연내에 집행되지 못한 상당한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으로의 전출이 실제 소요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결산상 여유자금이 2688억 원인데 이게 일부 수원국,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서 갑자기 차관원리금 1694억이 조기 상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할 것도 없고 굳이 저희가 수용한다면 한 주의 정도로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하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지만 항시 주의하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선언적 문구로 가자 하는 차관님의 의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저는 EDCF 사업이 국위선양이나 또 나라 간의 교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적자국채 많이 발행하고 빚내 가지고 이것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생각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조기 상환하는 바람에 여유자금이 좀 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리고 그게 다음 해에 재원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베트남에서 갑자기 조기 상환한 게 1800억?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1694억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1694억?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빚내서 추경하고 그 것을 투자하는 데 쓰면서 여유자금의 늘어나고 이런 상황은 어쨌든 국가재정에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추경에서 800억을 줄여서 정부가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줄여도 됐었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것을 한번 봤더니 EDCF는 문제가 이것 말고도 연도 중에 20% 딱 채워서 다 자체 변경했어요. 그렇지요? 4000억 정도를 자체 변경했는데 아시아 차관은 68%, 아프리카 차관은 182%, 1.8배 한 거지요. 중동 차관은 1.8배 초과 집행했고 중남미는 줄이고 민간 국제기구협력 차관은 당초 예산 대비 50%, 반밖에 못 했어요.

전체적으로 EDCF 기금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 예측가능성이나 집행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EDCF는 저희가 타 국가에 차관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행이나 시행하는 책임은 그 나라가 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쪽에서 그 원칙에 따라서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대신에 타이드(tied)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어플라이(apply)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늦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공무원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당초 예상과 달리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사업 집행이 잘되는 데는 원래대로 좀 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안 되고 지체되는 데들은 사업이 집행돼야 저희가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속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서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EDCF는 기본적으로 양허성 차관입니다. 0.1% 정도의 금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금리를 상업성 정도로 높이지 않으면 이것은 정부 예산이 계속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기상환금이 자꾸 오게 돼서 상환금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정부 예산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허성 차관은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의 한계는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에서 예산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약속 단계인지 MOU 단계인지 그 뒤에 구체적인 무슨 사인 단계인지 그 단계를 조금 뒤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이 검토하면서 저는 주의를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재정경제부 전문적으로 대화가 나와 가지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 작성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나는 모양이지요, 차관님?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보통은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 같은 것 하면 그 나라랑 얼마를 빌려주겠다는 계약서를 쓰거든요. 계약서를 쓰고 나서 그다음에 집행계획을 약 5년 내지 10년 정도로, 5년 정도 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각 사업에 합쳐 가지고 내년에 나갈 분이 얼마냐를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될 거고 일단 오늘은 시간상 부처 의견도 주의를 수용했으므로 주의로 결정하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17페이지, 연번 20번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연번 20번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사업이고요.

지적사항입니다.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을 예비비를 통해 운영하였는데 재정경제부 내 다른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지원단을 신설하고 예비비를 배정·집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율기구 설립 및 예비비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하고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은 그때 계엄이 난 이후에 대외적으로 우리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우려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는 주로 나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IR을 하고 우려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주로 그런 업무를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신정부가 들어서서 해외 IR 하는, V께서 나가서 하실 때도 서포트를 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핵심적인 점은 재경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를 왜 썼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게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신설 조직의 경우에 저희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 향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배정을 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정과 제도개선은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민주당이 말을 해야 되는데 부처가 수용한 게 제도개선이면……

○정태호 위원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국제금융대사랑 국제투자협력대사 지원단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아닙니다. 없어졌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 없어졌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제도개선 할 것도 없잖아.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없긴 합니다. 그런데 시정이 2개라서요 저희가……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해야 되나, 이미 그 당시에 긴급필요에 의해서, 국제신인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했고 일시 조직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건데 부처가 제도개선 한다고 하니 일단 받기는 하겠습니까만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굳이 삭제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위원 둘이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삭제해 버리면 위원의 지적사항이 너무 무색해지잖아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서 내가 지금 얼굴 보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21페이지입니다.

연번 27번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 인상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가산금리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 산정 시 청약률 제고 외에 정부의 조달비용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일관된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의 장기·안정적 자산 형성이라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단기물 발행을 지양하는 한편 고액 매입 편중 완화를 위해 1인당 연간 매입한도를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여기에도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문대립 위원이 보니까 좀 부정적 의견을 보이시네.

차관님.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아까 환율시장과 마찬가지로 국채시장이나 이쪽도 금융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문구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안 문구 보면 마지막에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일관된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인데 사실상 금융시장에서 국채금리를 결정하는 데 투명하고 일관된 산정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이론도 없고. 그래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할 것’ 정도로 고쳐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이걸 잘 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단기물 발행을 지양하는 한편 고액 매입 편중 완화를 위해 1인당 연간 매입한도를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인데 이 문제도 지금 사실 저희 국채 중에 개인투자 국채 비중이 1%도 채 안 되고 또 개인투자 국채시장이 사실상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지처럼 해 가지고 많이 특혜도 주고 발전이 돼 있는데 개인투자 국채시장도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정부 쪽에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 단기물 발행을 지양하고 고액 매입 편중 완화를 위해 1인당 연간 매입한도를 하향, 지금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갔는데 하여간 하향하는 방안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제안은 조금 사실상 한계,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를 들어서 ‘장기물의 발행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 검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차관님, 그러면 이 방향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를 봐도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렇게 결국…… 노후보장을 치게 되면 장기채 중심으로 사실 갈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개인투자용 국채가 정부에 조달 비용 증가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기존에 있는 금융상품과 서로 경쟁하게 될 수도 있어서 국채라는 본연의 임무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이런 것을 염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방향으로만 가지만 그것을 꼭 이렇게 명시적으로 투명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명시적으로 국채 발행이나 관련 내용은 역시 투명합니다 마는 이제 가격 결정에 있어서 금융시장이 좀 힘들고……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리고 향후 방향에 있어서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지적사항을 보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국민들의 장기·안정적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있다. 그런데 3년물·5년물 단기물 발행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이런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 지적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그 지적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단기물보다는, 물론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어느 정도 다양화할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완한다고 생각하면 장기물이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발행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재정경제부국고정책관 허승철 국고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말에 다음 달 발행계획을 공표하는데요. 예를 들면 9월 달에는 3년물 50억 원, 5년물 500억 원, 10년물 1100억 원, 20년물 650억 원 발행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사실은 기관에서 국채를 다 수용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안전자산으로 또 국채 발행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여유 룬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도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일본 같은 경우에 국채를 과다 발행, 우리가 보면 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대부분 개인들이 국채를 수용하면서 일본 국내에서 소화가 되다 보니까—기축통화라는 측면도 있지만—그래서 국채 발행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처음 도입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도를 사실은 도입해서 제도 운영을 할 수 없게,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제한을 해서 곤란하다고 입장을 말씀하신 거고.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 수용하고 문구도 제가 봐서는 부처에서 제안한 문구가 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만, 위원님들 혹시 그 문구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되 부처에서 제기한 시정요구사항 문구로 수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을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주성훈 관세청이 없고 조달청은 1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관세청하고 조달청 1건까지 빨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대기시킬 수는 없어서.

재정경제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 이명호입니다.

○국가데이터처기획조정관 양순필 기획조정관 양순필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국가데이터처에 대해서는 총 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정보시스템관리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정보시스템 업무개발실 임차비용으로 임차료와 관리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임차료 1억 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관리비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정보시스템 업무개발실 관련 임차료 및 관리비 소요를 정확히 산정하고 예산비목에 맞게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저희 수용 입장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수용하려면 시정을 수용해야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이게 사후적으로 세목 조정해서 부족분 충당하려는 행정편의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글썄요 저는 주의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태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은 주의를 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당연히 예상되는 이런 관리비 예산조차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그 관계 공무원의 굉장한 업무 태만이나 업무 무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주의를 줄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비목에 맞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주의를 줄 것’ 저는 이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공무원들이 업무에 이렇게까지 소홀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임차비용이 있는데 관리비용이 안 생깁니까? 초등학생한테 맡겨도 그것은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저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문구 수정한 것.

○정태호 위원 정부에 한번……

○소위원장 유상범 방금 ‘알겠습니다’ 하고 답을 하셔서……

○정태호 위원 동의해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동의 안 해도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정태호 위원 그래도 의견은 들어 봐야 되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국가데이터처는 정보시스템 업무개발실 관련 임차료 및 관리비 소

요를 정확히 산정하고 예산비목에 맞게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주의를 줄 것.

○소위원장 유상범 예,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를 봤으므로 정리하고요, 문구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문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늘 재경위, 국토위 인사 청문회 관련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 분들이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2시 반에 재개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중간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바로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입니다.

○기획예산처기획조정실장 김명중 기초실장 김명중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같이 오신 분들 있으면 인사는 해야지.

○기획예산처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 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입니다.

○기획예산처기획재정담당관실 나원주 기획재정담당관실 나원주 사무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기획예산처에 대해서는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7건입니다.

연번 1번,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재경부 때 같이 논의를 하였고 보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번 2번, 2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연번 1번은 보류로 지난번에 미리 결정이 났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연번 2번, 국가채무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부채를 D1, D2, D3 기준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여기에 빠져 있는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보다 체계적인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여기에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저희는 문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연금충당부채는 IMF나 OECD 같은 국제 비교 기준에서는 부채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문구만 좀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기보다는 ‘연금충당부채 관련 국제기준 논의 동향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할 것’ 이렇게 그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것 자체를 검토를……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포함할 것’이라는 요구도 아니고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면 조차관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굳이 그 문구를 그렇게 고칠 필요가 있겠어요, 제도개선 받아들인다면?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그런데 국가부채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은, 이미 국가부채 기준은 정립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D1, D2, D3로 해 가지고. 그런데 연금충당부채는 재무제표상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부채 기준은 정립되어 있는데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하니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라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요청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 매년 나왔던 지적사항 아닌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이걸 예결위 정책질의 때는 가끔 제기되는데요 결산에서 지적된 거는 저는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소위원장 유상범 수정요구 문구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정리하께?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끝부분 연금충당부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연금충당부채 관련 국제기준 논의 동향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할 것.

○소위원장 유상범 이 부분은 제도개선은 수용하되 문구를 수정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박수영 위원이 국가재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도 크고 실제로 연금충당부채 부분이라는 것이 국제기준—우리나라는 채택을 안 하지만—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일단 보류하고 그 수정 안건을 박수영 위원께서 수용할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도개선 수용, 문구 수정은 보류.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33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재정사업평가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금존치평가는 공자기금과 같이 폐지·통합이 불가능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청산

이 예정된 재정성·연금성 기금까지 평가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존치평가의 평가방식을 자금운용의 효율성, 부채 상환·청산 진도에 대한 점검 등 기금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여기에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존치평가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평가 및 보고서에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는 기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예산안 편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여기에도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존치평가 수행 시 기금사업의 기금 적합성 및 이관 필요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여기에도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구조 적정성에 대해 차기 기금존치평가 시 면밀하게 검토할 것. 여기에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하나씩 나눠서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저희는 일단 유형을 시정요구에서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기금존치평가 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27년 평가지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성과관리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가 같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에도 재원구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차기 기금존치평가할 때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성과관리개선 TF를 마련할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세 개는 전부 저희들이 개선사항에 반영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도 차기 기금존치평가 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만 시정을, 시정은 부당하거나 위법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개선 사항으로 바꿔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바꿔 달라고 하고, 지금 지적된 모든 네 가지 중에 세 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 TF를 통해서 2027년에 개선을 할 예정이니 그리고 내용도 제도개선으로 보이니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맞지요?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그런데 김교홍 위원님 지적한 거는, 내용상으로는 다 맞는 말씀 하신 것 같고 일부 문구는 합치겠다는 거지요? 일부 네 개,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이종욱 위원 일부 문구는 좀 고친다는 거지요, 합쳐서?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아닙니다. 제도개선만 해 주시면……

○이종욱 위원 그대로 놔둬도 되고.

시정요구유형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저는 제도개선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부처의 의견을 수용해서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재정사업평가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6년 1월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개편하고 5월까지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2025년 중에 이와 관련된 사전 연구용역, 시행령 개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용역 및 전문가·피평가기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및 평가기준을 사전에 정비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사전에 연구용역,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면밀히 거치지 않은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의 시행 과정에서 평가의 실효성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것, 여기에 정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지금 유형에는 주의와 제도개선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 사유는 지적된 것처럼 시행령 개정이 되기 전에 불가피하게 이런 성과평가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전 준비를 했어야 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행령 개정도 5월에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도 지적된 내용을 보면 향후 평가체계 개편 시 법적 근거 마련 등 사전 준비에 기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유형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평가의 수용성과 내실화를 위해서 올해 평가 이후에 피평가기관의 통합평가 진단팀을 운영해서 제도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7~31년 성과관리기본계획을 향후에 발표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통합평가지침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제도를 개정하기 전에 시행했으니 감안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차관님, 이게 이름은 비슷해 보이는데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변화된 게 많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기본적으로 부처 자체적으로 하던 걸 지금은 여러 전문가들이랑 모여서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그렇습니다. 예전의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합평가로 바꾼 것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가시스템이나 절차나 이런 게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면 부처도 따라오기 힘들고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용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리 발생할 문제점 이런 것도 사전 점검할 필요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부처의 반발도 있을 거고 어려운 점이 없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 협의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좀 늦어졌고요. 그런데 통합재정사업평가가 예산 편성 전에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령 개정 작업과 통합평가를 같이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원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어떤 제도개선을 하실 거예요, 벌써 다 했는데?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처가 반발할 가능성도 처음에는 있었기 때문에요 부처의 수용성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부처의 어떤 의견을 참작해서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통합평가로 급작스럽게 바뀐 것 자체는 조금 주의를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변경된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를 조금 더 정밀하게 고친다는 전제하에 제도개선으로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그냥 넘어가면 좋겠지만 차관님, 필요성과 시급성이라는 게 있고 행정절차의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게 우선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되면 제도를 바꾸기 전에도 신속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바꿨어요. 이게 걱정한가요? 저는 이견 걱정치 않다고 봅니다. 사전 조율 과정이 필요한 부분, 시행령을 만들면서 충분히 사전 조율이 가능하고 또 시행령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행정부처 내부에서의 조율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려오면 먼저 이 제도 받고 언론에 공포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시행한 다음에 시행령을 뒤늦게 개정을 해요.

이것 내년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아니, 올해부터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올해부터 적용이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그래서 시행령 개정도 마무리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을 하는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합평가로 바꾸면서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처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일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 필요성과 시급성을 명분으로 세워서 언제까지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거기에 맞춘 제도적 변화를 택한다 하는 것은 국가행정에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원하시지만 이미 제도개선 다 하셨다면서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시행령……

○소위원장 유상범 필요한 제도개선은 진행 중에 있고요.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봅니다. 여기 주의를 보시면 특정 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라는 주의가 아니라 향후에는 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정도의 지적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신다면 앞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필요하면 제도를 변경시키기도 전에 임의로 행정부처에서 자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길을 터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괜찮다면 그냥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정도로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일단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하고요.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재정 제도 개편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법적 근거를 충분히 재정비한 후에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리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재발이 안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계속 바뀌는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 그게 바로 행정편의주의고 그게 좀 더 나가면 독재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것 보류할까요 아니면……

주의 자체가 개인에 대한 주의를 주고 책임을 주는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수용하시는 걸로 하고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가 법률가 출신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측면이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위원님들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수용했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정리하고 시정요구사항 문구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문구 그대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35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재정사업평가고요.

동 사업의 재정사업심층평가의 경우 평가가 지연되어 각 부처에서 평가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안 요구 시 반영할 수 없게 됐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심층평가의 적기 추진 및 평가 결과의 예산안 요구서 반영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이것도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여기에 지적된 내용도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상반기 착수 과제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편성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7년에도 과제 선정을 좀 앞당겨 가지고 2월에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충분히 앞으로 할 생각이니까요 유형을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아마 매년 반복되는 얘기 같기는 한데……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저희들이 과제 선정을 일찍 하고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부처의 요구 단계 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은 조금 이렇게 늦어지는 게.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평가하다 보면 평가단에 따라 가지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민간이 합니까, 평가를 주로?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소위원장 유상범 민간에서 하게 되면 공직자들이 하는 것처럼 타임라인을 잘 지키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저희들이 과정 관리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연구자들의 어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태호 위원 제도개선 동의입니다.

○이종욱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이종욱 위원 제도개선으로 했다가 위원장님이 또 시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소위원장 유상범 조 차관님이 오늘 말한 것 중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당사자가, 이 사업을 하는 책임자가 그 부분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뱉어 놓으셨으니까 가능하시도록 관리를 하셔야지요, 그 전에 그만두면 안 되고.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심층평가 제도는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 끝나고 나서 부처가, 처음 듣는 건 아니고 사실 심층평가 하면서 여러 차례 부처 설명도 듣고 중간에 회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예산 요구 끝나고 나서 이렇게 통보가 특 날아오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제도개선 해서 조금 더 당기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우리가 보통은 예산 제출하기 전까지는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통상 얼마나 늦어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보통 한, 많이 늦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중간중간에 중간결과도 보고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대응은 다 그 결과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종 보고 결과가 한 달 정도 늦어진거나 두 달 정도 늦어지는 경우는 있는데요. 적어도 예산안 편성 마무리될 때까지는 다 마무리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내년에는 여기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문제네. 그래도 조 차관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정리하고 문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 중장기 경제전략기획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신 김교홍 위원님으로부터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주의로 변경하신다는 서면질의 변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미래전략컨퍼런스는 1회만 개최되었으나 소요된 비용은 3회 개최된 미래전략포럼보다 9400만 원이 많은 1억 6000만 원을 썼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고가의 행사장을 임차하고 행사대행업체를 활용하는 등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과다한 행사비가 집행되었으므로 행사와 관련된 전반적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 감사 및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할 것, 여기에 정부의 이견이 있었으나……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김교홍 의원실하고 저희들이 사전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징계가 아니라 주의로 시정요구사항을 바꿔 주시겠다고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부 감사 및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문구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저희들이 그 문구도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나눈 게 ‘기획예산처는 미래전략컨퍼런스 행사와 관련된 전반적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행사 규모와 목적에 맞게 적정한 행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문구는 얘기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문구까지 아마 조율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이것은 뭐 여당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여당 위원님하고 소통 좀 잘하세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미래전략컨퍼런스는 언제, 이것 대통령 행사였나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아닙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언제 했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12월에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작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장관님 주제로 했나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이종욱 위원 뭐 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지적된 것처럼 포럼 같은 경우에는 30~6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이 컨퍼런스 같은 경우 한 10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하는 행사고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12월에 여의도에서 개최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페어몬트 호텔에서 해 가지고 약간의 임차료가 많이 올랐었다 그런 지적들을 받았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하여튼 예산 중간에 규모나 이런 게 급격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잘 주의해 주시고 김교홍 위원님하고 주의로 시정요구 유형이 정리됐다고 하니까 저는 문구 좀 바뀌어서 주의로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일치를 봤고 부처의 요구대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결정하고 부처 의견이 제시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도 부처 의견대로 정리를 하는 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연번 10번,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획예산처는 2025년 5월 제2회 추경안 편성 시 5.3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에는 지출시점이 다음 연도로 연기된 사

업, 자연종료사업 등이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지출구조조정에 있어 단순 지출시기 이연, 사업의 자연종료, 사업 이관·명칭변경 등을 사업축소·폐지와 구분하고 총사업비 절감액 등 실제 지출 절감액을 기준으로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관리·공개하는 등 지출구조조정 기준을 정비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제도개선 시정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요 문구 수정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업처럼, 내용처럼 저희가 자연종료 같은 사업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다만 이견이 있는 게 사업 시기 이연이라는 측면입니다.

지출구조조정의 정의를 보시면 저희들이 한 게 기본적으로 유사 중복이나 집행 부진 사업을 정비하거나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의도적인 절감 노력을 통해서 사업을 감축하는 것을 지출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 지출시기 이연이라고만 돼 있지만요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 지출시기를 이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출시기를 이연해서 절감된 재원만큼 다른 핵심 과제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반대 논리라면 아니, 집행 부진이 예상돼도 지출시기 이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출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지출구조조정 중의 한 유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5년에 끝낼 것을 지출시기를 이연해서 7년으로 늘린다, 이것은 지출구조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절감분만큼 다른 핵심 사업에 재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단순 지출시기 이연’ 문구만 좀 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단순 지출시기 이연은 사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산실에서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 기간, 시행시기를 몇 년 늦춘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통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단순 지출시기 이연이라는 것을,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이종욱 위원 약간 이것은 조금 성격이 그렇게 심각한 지출구조조정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예산실 입장에서는 오해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일단 명확히 구분해서 내역별로 이렇게 공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여기 단순 지출시기 이연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그런데 여기가 들어가 버리면 지출시기 조정한 것도 지출구조조정이 아니더라고 해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형별로 지출구조조정 결과를 지금 공개를 하는데요. 유형별로 좀 더 세밀화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이것은 조금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처에서는 문대림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종료, 이관·명칭변경 이런 것같이 현재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분류되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업이 자연종료 같은 것은 저희들은 지출구조조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 사업 이관·명칭변경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지출구조조정 시점을 관리·공개하거나 지출구조조정 기준을 정비할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봤는데 단순 지출시기 이연은 지출구조조정으로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대림 의원 얘기는 뭐냐 하면 지출 구조조정의 유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단순 지출시기 이연도 포함돼 있는데 그것까지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각각의 내용을 분류해서 전달해 달라는 얘기거든?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지금 조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단순 지출시기 이연 자체를 나중에 분류를 안 하겠다 그것은 빼고 나머지만 분류해서 구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정리를 좀……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태호 위원 좀 혼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 자연종료사업이나 또는 이관을 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정태호 위원 그다음에 차관님 말씀으로는 단순히 단순 지출시기를 이연하는 것은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포함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다만 지금 문대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이것을 좀 구분해 가지고 공개하면 지출 구조조정의 내역을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거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제안해 봐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단순 지출시기를 앞에 넣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요, ‘지출구조조정에 있어 사업의 자연종료, 사업 이관·명칭변경 등을 사업축소·폐지와 구분하고 지출시기 이연, 총사업비 절감액 등 실제 지출 절감액을 기준으로 지출 구조조정 실적을 관리·공개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 기준을 정비할 것’ 이렇게 하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좀 명확해지네.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그래서 단순이라는 말은 빼 주시고요, 지출시기 이연을 뒤로 갖다 붙이면 좀 더 명확하게 시정요구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예산처에서 제안한 그게 합리적인 시정요구 문구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 의견 받아들이시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정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예산처에서 요구한 시정요구사항 문구 수정안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질의가 있는데요.

○소위원장 유상범 질의하세요.

○배준영 위원 차관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33페이지, 기금 관련 평가체계 개선 필요에 보면 기금존치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존치평가가 있는데 지적사항 두 번째 대시를 보면 기금존치평가는 유사·중복 여부를 기반으로 존치·개선·이관·통합·폐지를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금이 다른 기금과 비슷하거나 그러면, 기금이 67개가 있는데 원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겹치게 되면 기금존치평가에서 존치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것을 결정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래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미래대응기금이 교육·청년·지방·성장동력, 이게 기존의 기금뿐만 아니라 일반회계하고도 거의 대부분 겹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공적자금상환기금도 기금존치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미래대응기금도 기금존치평가를 받습니까?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나중에 되면 기금존치평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지금 설립을 하면요.

○배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유사·중복 여부를 따지고 보면 대부분 다 겹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도 재경부장관님이나 기획예산처장관님한테 ‘이것은 일반회계나 다름없다. 이렇게 겹치는데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데 답변을 잘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162조 원이나 되고 30% 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도 할 수 있는 데다가…… 그래서 차관님 입장에서 이게 과연 기금으로서 기금존치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제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일반회계와의 차이점을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우리나라가 단년도 예산회계주의 아닙니까? 단년도 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올해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단년도 예산회계주의 제도하에서는 그걸 다 쓰거나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에도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단년도 예산회계주의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저희들이 재정안정화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들어올 때는 적립을 하고 안 들어올 때는 그것을 보장하고.

그래서 이런 취지의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단년도 예산주의의 그 한계를 저희가 넘어서 보자고 하는

취지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장관님한테 똑같이 들었는데 제가 아는 국가재정법은 이런 초과세수가 생기면 일단 지방의 지자체나 교육청에 배부하고 그리고 기금에 관련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그리고 필요하면 추경을 하고 아니면 다음 연도 이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단년도 회계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공자기금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경제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플랜을 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막대한 200조 넘는 반도체 세수를 우리가 만약에 지금 모아 두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아는 재정 상식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국가재정법에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사·중복 여부를 판단해서…… 펀드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게 하고 그 범위 안에서 20%~30% 내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일반회계는 여러 목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쓰는데 스트릭트(strict)하게 하는, 그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양쪽의 성격을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기금존치평가의 대상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존치를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재경부나, 하여튼 재정 당국이 여태까지 취해 왔던 태도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더 이상, 어차피 이 사안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계속되는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 지역의 기초단체 군수께서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국가적으로 세수가 200조 원이 넘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정리하면 본인들이 1년에 한 1800억 정도를 더 배당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미래대응기금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원을, 예산으로 잡는 것을 10년 평균의 6.2%로 계산해서 잡다 보니까 실제로는 자기들한테 내년 예산으로 한 100억 조금 더 국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통교부세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니까 빈약한 지방재정에, 지금 사업들은 계속 지출사업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비와 매칭하는 사업조차도 할 수 있을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서…… 아마 각 기초자치단체가 좀 있으면 이걸 심각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즉 200조의 세원이 늘었는데 왜 우리는 그 혜택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지방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지만 곧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상 미래대응기금을 할 때 양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줄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교부세도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지요. 줄지는 않는데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소위 초과세수 200

조로서 자기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배정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크고, 이 부분은 그래도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답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계속할 수 없잖아요, 예산처라고. 이 정도 봐줬으면 됐지 뭘 그래.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리하는 걸로 하고.

시정요구유형 아까 다 끝났지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소위원장 유상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차장 박해영 국세청 차장 박해영입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유재준 국세청 기획조정관 유재준입니다.

○국세청정보화운영담당관 지임구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지임구입니다.

○국세청징세과장 이주연 국세청 징세과장 이주연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 시작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국세청에 대해서는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2건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 관리용역비 3억 2000만 원과 공공요금 2억 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엔티스 고도화 내역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세청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전용을 통해 추진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내용 중 ‘관련자’를 ‘관련 부서’로 변경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부안 및 국회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고 말을 해야지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사람입니까?

말씀하세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2025년도 예산안에 최종 편성되지는 못했지만 당시 기재위 예결소위 심사에서 예산 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용을 통해서라도 ISP 수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저희들도 부처에서 예산 관련 지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후에 예산 전용을 승인받아서 ISP 사업을 집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는 그것도 안 하면 불법이니까 앞으로 설명을 빼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국세청차장 박해영 예.

○소위원장 유상범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다 그래서 일반연구비로 전용하라는 지적까지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엔티스 고도화 ISP를, 연도 중에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보니까 정부 예산안을 요구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 국회에서도 한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다음 연도 중에 전용해서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국세청차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이 과정들을 예산처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예산처에서 뒤에서 반대의견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는 국회에서 안 받아 준 거잖아요, 예결위에서. 그런데 뒤돌아서서 정부 차원에서 연도 중에 전용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주의로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은 미니멈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문제는 이 관련자가 국세청장이 시켜서 했을 텐데 국세청장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박지원 위원, 그럴 거 아니에요. 관련자에게 주의를 준다는 거는 좀, 국세청장 지시로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게 가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지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으로 할까요, 차장님?

○국세청차장 박해영 관련 부서, 정보화 담당……

○소위원장 유상범 이렇게 합시다. 추진한 관련 부서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관련 부서?

○국세청차장 박해영 예,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 예산 관련된 건 그렇고, 엔티스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고도화한다는 게 사실 민간 사업자가 굶어 가는 거를 이 후단에 있는 엔티스를 통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유료화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국세청차장 박해영 기본적으로 이번에 돼 있는 부분들은 세무 플랫폼 이용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민간에서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 측면에서 납세 협력 비용을 가장 최소화로 줄이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국세행정과 대민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AI를 통한 국세행정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돈을 내고 하는 유료화 서비스가 되는 건가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그렇지 않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 않나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예.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렇게 시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전용해 놓으면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예산이 마무리돼야지 또 5개월이 경과한 후에나 사업이 시행되고…… 보니까 욕먹을 거는 다 구비를 했구먼요.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고 시정요구사항 문구는 조금 전에 논의한 대로 관계자를 관계 부서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55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가산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세청 가산금 수납액은 2021년 5541억 원에서 2025년 1765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불납결손액은 같은 기간 4773억 원에서 1조 2474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가산금 수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세청은 수납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가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부처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징수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내 기대와 전혀 다른데. 이걸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수용으로 해서 가지면……

○**국세청차장 박해영** 기본적으로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세법 개정된 이후로 지금 납부지연가산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가산금과 증가산금의 경우에는 6년이 초과된 장기체납 부분으로 수납률을 낮추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체납자의 실태 확인과 수색,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서 가산금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국세청에서 추정한다고 무슨 단 만들었잖아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체납관리단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체납관리단 거기에는 불납결손액 이 사람도 포함이 됐나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세 체납과 국세 이외의 가산금이 들어가 있는 체납 부분들이 있는데 징수 우선순위가 국세 체납 부분부터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세 외에 해당하는, 장기 체납되어 있는 가산금 부분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세 체납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가산금이 갖고 있는 건 일종의 징벌적 부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국가의 어떤 납부 명령을 불이행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상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벌의 가치로 치면 가산금을 불이행한 부분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만 묻자. 이것만 정리하고 갑니다.

이 제도개선 방안은 있습니까? 올해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저희 전체……

○**소위원장 유상범** 현재까지는 얼마예요, 불납결손액이?

○**국세청차장 박해영** 현재까지, 25년 기준으로 불납결손액이 1조 2000억 수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현재까지, 2026년에? 이것은 작년 거고, 올해는 불납결손액이 얼마나 예상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면 정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래 놓고서 매년 반복이 돼 가지고 불납결손액이 늘면 다음에는, 아무 대책도 없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오히려 더 늘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국세청차장 박해영**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세 체납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가산금 불납을 가지고 방치하는 결과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더 강한 시정요구 유형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체납관리단 이외에도 저희 체납 추적조사 부분들을 더욱 열심히 해서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최하 주의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 더, 다음에도 이게 동일한 반복이 되고 확대가 되면 아마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한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도개선 방안 고민을 잘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차장 박해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잠깐만……

○**소위원장 유상범** 예.

○**이종욱 위원**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체납징수단 있잖아요, 국세·국세외수입. 전 부처 지금 모든 수입 체납관리단 발족시켰지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 5500명 채용했습니까? 구천몇백 명……

○국세청차장 박해영 지금 현재 체납관리단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6000명이고요, 10월 1일부터 4000명이 추가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목표가 1만 명이네요. 그렇지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이게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물론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잘 걷는 건 중요한데 1만 명이나 동원을 해 가지고 징수하기 위해서 다닐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현장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요, 물론 그런 악덕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몇만 명입니까? 오백몇십만 명이더라고요, 지금 걸려 있는 게. 조금조금씩 체납된 사람들, 중소기업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도망 다니려고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사실상 생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등 국가 기관에서 1만 명이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뒤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생산적이냐? 결국 소상공인 주머니에 있던 돈을 국가가 가져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인건비로 쓰는 거고.

그래서 너무 키우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부작용이 처음이니까 없겠지만 앞으로 현장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국세청에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과 현장 마찰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한마디하세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관리단 운영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세와 국세외수입 부분들을, 거두지 못했던 국세외수입 부분들까지 더 거둔다는 측면들도 있지만 체납된 납세자들의 여러 경제 상황들을 살펴서 납부의무도 소멸을 해 주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부분들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저희 국세청 측면에서도 체납자에 대한 장부 정리라는 측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추진해야 될 필요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고 있고 단순히 체납액 징수만을 위한 목표를 넘어서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 당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전화 오고 찾아오고 연락 오고 해 봐요,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하시라고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예.

○배준영 위원 저도.

○소위원장 유상범 하세요, 저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배준영 위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국세 수입 정확하게 해 갖고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세제 개편으로도 3조 400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더 걷는데 이런 가운데 이

게 일자리 창출도 좋고 그런데 과도하게 이런 세금을 걷는 데 1만 명이나 동원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설명 듣기로는 이렇게 다니다가 아주 어려운 분들을 현장에서 발견하면 세금을 탕감하고 이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첨언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국세청차장 박해영 저희들이 체납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납부가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 방법 등을 안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경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부의무 소멸 요건 부분들도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납부의무 소멸이 돼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체납자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해 나가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준영 위원 그래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그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인데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기간을 더 늘린다는 것을 기업에 대한 혜택처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차장 박해영 예.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민생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 옥죄지 않으려는 생각이거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세청차장 박해영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납세자, 체납자 유형별로 나눠서 실제로 납부할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반해서 납부할 여력이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납부의무 소멸제도도 안내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여러 복지 혜택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사실 방치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거둘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이라도 걷고 못 거둘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납부의무 소멸도 시켜 주고 다른 경제적으로 재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설명을 다 하셔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오랜만에 그래도 ‘존경하는’까지 붙였는데 그냥 넘어 가네요.

주의 이상의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실 때는요 적어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구사항이 정계 이렇게 나오면 미리 조금 더 준비를 해 뒀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

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관세청차장 박헌 관세청 차장 박헌입니다.

○관세청기획조정관 한창령 기조관 한창령입니다.

○관세청운영지원과장 김현석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김현석입니다.

○관세청운영지원과 고준평 관세청 결산팀장 고준평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관세청에 대해서는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침에 좀 기다렸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왜 그렇게 점심 먹으러 빨리 가는 바람에……

○관세청차장 박헌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관세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달청 관계자분들은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조달청차장 강성민 조달청차장 강성민입니다.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기획조정관 이형식입니다.

○조달청디지털조달총괄과장 방형준 디지털조달총괄과장 방형준입니다.

○조달청조달회계팀장 김수미 조달회계팀장 김수미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조달청에 대해서는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지연에 따른 실소요를 본예산에 적시 반영하지 못해 예산 6억 2000만 원을 조정하고 관리용역비 8억 4600만 원을 불용하는 등 예산 산정 및 편성을

면밀히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의 개통 지연에 따른 실소요를 적시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고 공공조달 창구 일원화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연되고 있는 자체조달시스템 통합을 조속히 완료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저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이 주의, 제도개선 두 가지여서 하나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그 내용을 좀 말씀하셔야지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저희가 이게 나라장터가 예상치 않게 한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과 예산을 연계해 차질 없이 관리하고 또 통합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상 기관과 협의해서 자체 조달시스템 통합이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조속히 완료라는 말처럼 모호하고 의미 없는 얘기는 없어요.

자체적으로 조달청에서 그러면 자체 조달시스템 통합을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조달청차장 강성민 차세대 나라장터하고 같이 추진을 했었고요. 그 전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돼 있는 것은 나머지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추진해 왔고요. 아직 한 10개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28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위의 개통 지연 예산 문제는 그렇고.

저는 자체시스템 통합하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기억으로는 원래 금년 말까지 다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026년이면 다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기관들이 다 좀 힘이 세요. 한전, 철도공사, 도로공사…… 금액도 크고. 이게 권한을 나라장터로 다 넘기려고 하니까 부처에서, 기관에서 그걸 원치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조달청 차원에서 이것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정부나 아니면 국조실에서 개입되지 않고는 조달청 차원에서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정부 전체로 할 그런 의지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조달청차장 강성민 재정부 그다음에 기예처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안 되잖아요. 계속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년 사이에 2년이 늘었는데.

○조달청차장 강성민 나라장터 시스템 자체가 늦게 구축되는 것하고 연동이 좀 일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기관의 새로운 요구사항하고 저희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을 맞춰 줘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튀어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자원공사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그래도 좀 우호적인 기관이었는데 완전히 뒤로 가 있네, 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약간……

○**조달청차장 강성민** 일정대로 진행된 게 있고 조금 늦어진 기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강력 반대하는 기관들은 아는데, 이 2개는 그래도 조금 협조적이었는데 제일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빌미를 주면…… 다 하기 싫잖아요. 이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자기들 자체조달시스템으로, 자체 권한으로 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달청 차원에서 할 게 아니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는데…… 이번 정부 보니까 공공기관 통폐합도 잘하고 하시던데 그것보다 더 쉬운 이런 것은 더 빨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문구를 좀 더 강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이걸 이종욱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아요. 조달청 혼자서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이고……

산하기관을 두고 계신 허 차관님!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소위원장 유상범** 재정경제부 입장은 첫째, 자체조달시스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입장 이신가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조달청과 입장이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사실 조달청 혼자서는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경제부에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앞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원장 유상범** 올해 끝낸다고 하는 것이 지금 2년이나 미뤄진다는 것은 사실 재정부에서 크게 여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니겠어요? 이것 재경부나 국무조정실 이런 데서 안 나서면 힘들지 않겠어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기획예산처도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기획예산처도 통합은 해야 된다는 게 방향입니까?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그 부분은 정부 내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위원장 유상범** 없어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기획예산처도 당연히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 논의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종욱 위원님, 문구를 좀 강하게 하신다면 문구는 추후 논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정리하시겠습니까? 일단 유형은 제도개선은 그대로 하는 걸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이종욱 위원** 예. 자체…… 뒤에만 좀 바꾸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자체조달시스템 통합을 조속히 완료할 정부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조속히 완료할 정부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배준영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이렇게 제도개선으로 하고 대신 시정요구 문구는 방금 이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보고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허 차관님, 결국은 재정경제부가 책임을 져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보고 가능하시겠어요, 조달청이랑 같이?

○조달청차장 강성민 특별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소위원장 유상범 9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9월 중에?

○소위원장 유상범 9월 중에 문제 제기를 한 이종욱 위원님, 우리 결산소위 위원님들께 그 진행 상황을 보고서를 해서 구체적인 정부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조달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총무비서관 윤기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정도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수행한 분들 같이 말씀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재무팀장 채정관 재무팀장 채정관입니다.

○대통령비서실행정관 정종범 정종범 행정관입니다.

○대통령비서실행정관 김재영 김재영 행정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 시작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는 총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고 보고사항도 2건입니다.

69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업무지원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으로도 집행 가능한 간담회·면담 비용과 전문가 조력비 등을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등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비식별하여 공개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이 필요하고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저희 대통령비서실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미 기예처의 집행지침이나 아니면 감사원의 증명지침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도 더 폭넓게 집행에 유의하고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못 한다기보다 이미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비서관님, 이행해 오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이행을 하고 있지요,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저희 국민주권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작년 7월에 이미 특활비가 예산 성립되면서 9월에 1차적으로 대국민 공개를 하였습니다. 공개를 하였고, 앞으로도 2차적으로 금년 2월에 작년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박홍근 장관님도 이게 정부 최초로 공개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PPT까지 제가 띄워서 했지만 실제 날짜·금액·집행명목, 제목이지요. 제목, 그 정도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깜깜이 공개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 정도 공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공개 지침이나 아니면 23년 4월에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그렇게 공개한 부분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님한테 물어보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공개 안 했다고 82억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비서관님.

이거 전액 삭감하고 청와대 운영이 됩니까? 25년 같은 경우에는 41억 6개월 치, 5개월 치인지 6개월 치인지 추정 반영했잖아요? 그게 필수대상이지요?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러면 공개하고 있는 게 최대한 공개한 거라는 입장입니까? 그 이상 공개할 수는 없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기밀성을 본질로 하는 특활비의 성격상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공개를 안 했다고 그러면 전액 삭

감하고 그래도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현실적으로는 이것 없이는 청와대 국정 운영이 불가능했었다, 그걸 확인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개할 때는 이것마저도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더니 왜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또 바꿨어요? 처음에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분기별로, 월별로 공개하겠다고 그래 놓고 연말에 가서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바꿨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그 당해연도의 회계가 끝나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익년도 1월에 정기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비서관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없이는 살 수 없는 돈이다, 그런데 전임 국회에서 전액을 삭감을 했다 그런 거고 공개도 이 이상은 할 수 없다, 말씀을 다 그대로 끝이 들으면요. 공개도 이 이상 할 수 없다, 더 이상 공개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옛날에 민주당에서 영수증까지 다 내라 그랬어요. 그 영수증 제출하는 거는 무리한 요구다 이 말씀이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무리하다기보다 그래도 대법원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만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수행자라든가 또 대상자라든가 이런 건 공개하지 않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최소한 제도개선, 시정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 저희가 지난 정부의 여당이었지요. 제가 운영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특활비를 제대로 공개 안 하고 목적이 확실치 않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논리가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추경으로 신규 편성을 했는데……

제가 방금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집행지침상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여기 보니까 취약·청년계층 대국민 위로 및 격려, 격려, 소외계층 격려 이거는 특수활동비의 지침상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쓰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투명하게 집행내역을 밝히셨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에 2025년 12월 8일 보면 국가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2000만 원, 2025년 12월 14일 보면 국가 상징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3000만 원. 전문가 조력이 진짜 무슨 애기인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겠고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특활비를 추경으로 쓰셨는데 목적에도 맞지 않게 쓰시고 그리고 공개한 내역도 이게 터무니없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 앞으로는 청와대에서는 특활비를 신청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많이 시정을 해

야 되는데도, 시정이나 제도개선을 안 하시겠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시정을 통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배준영 위원**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는 안 하실 것 같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일단 현재 공개하고 있는 집행일자, 집행유형, 집행목적, 집행금액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대법원이 비공개 사항으로 둔 것은 집행 상대방, 특수활동 수행자, 구체적인 집행목적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공개하고 계시는 게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다음에 위로금·격려금 같은 경우에는 기예처의 예산집행지침하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준수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김성희 위원** 법에 따라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고, 전문가 조력 같은 경우는 기밀유지가 필요할 때는 기밀을 유지해서 그러니까 총액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침이 만들어진 겁니까, 이거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조력이나 위로 간담회 같은 것도 대상에 따라서 기밀성이 필요로 하다면 특수활동비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 외의 것은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저도 방금 말씀드렸던 기획예산처, 기예처하고 감사원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형태로든 검증이 되면, 검증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김성희 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공개 수준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정한 바대로, 이전 정부에서 안 했던 얘기 저희가 지금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도 절반은 나중에 다시 원상 복구를 했었고 그 당시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경호처는 와서 구두로 그리고 비공개로 관련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 여야의 동의를 받아서 특활비 집행이 됐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민주당에게만 지울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봐서 만약에 더 공개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것 법적으로 따져 물어서 법원의 명령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가이드라인대로,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도개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태호 위원** 기예처 차관님한테 여쭙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기예처 예산집행지침에 특별하게 위반되는 사항은 없지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비서관님, 역대 정부에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적이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 공개한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정태호 위원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것 조사해 본 적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외국의 사례는 아직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자별로 집행 내역을 대통령비서실 수준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정보공개법과 또 법원의 판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정태호 위원 그런 거지요. 우선 공개 대상, 비공개해야 될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수활동 수행자라든가 그러니까 이제—청와대 직원이 되겠지요, 대통령을 포함해서—상대방 그다음에 상대방 그다음에 구체적인 집행명목 이런 것들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하는 거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거지요.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정태호 위원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보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 놓고 그 사유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 개인정보가 공개돼서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보공개법과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지금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이 취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법원 판결과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지요, 그 취지에 따르면. 그런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정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쟁점이 이런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그 사례가 특수활동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사용을 공개했을 때 그 공개 내용이 적절하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그 두 가지 점을 동시에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기획예산처에

질문했듯이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과 정보공개법 취지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이재명 정부의 아주 적극적 행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시정요구는 저는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박지원 위원.

○朴芝源 위원 정태호 간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우리 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제 와 가지고 법원 판결이라든지 정보공개법, 외국 사례를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단 한 정권의 필수 기능을 막아 놓고, 목을 비틀어 놓고 이제 와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려면 최소한 ‘옛날에 우리가 이런 요구한 것은 잘못했다, 유감을 표한다’ 정도 말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2023년에 민주당이 특활비 TF를 만들었어요. 14개 부처 사용 내역을 소명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요구했던 건 이런 겁니다. 현금 사용 목록, 단위사업별 지급 시기, 상세 집행 자료, 증거 서류, 심의위원회 규정, 회의록, 심의 결과 이것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TF 단장이 누구였는지 압니까? 요새 그 유명한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집행 지침도 만들고 집행 계획도 작성하고 집행 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살살이 홈페이지 공개도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유감 표명부터 하고 하십시오, 간사님.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 저도……

○소위원장 유상범 하하지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또는 정부는 적절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청와대는—그때는 대통령실이라고 그랬지요?—대통령실은 전혀 성의 있는 답변들을 못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도 않는 그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아까 기획예산처에서 답변을 하셨나요?

그게 집행지침에 맞게 쓰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십니까, 특활비가?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제가 사전에 확인한 바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관련된 내용들은 집행지침상 문제는 없는 걸로……

○배준영 위원 문제가 없어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배준영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지침에는 집행지침상 특활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저도 집행지침을 보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취약 청년계층 대국민 위로 및 격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취약 청년이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국민 고통 위로 등 대국민 격려,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이라는 얘기인데 그분들한테 600만 원을 줬는데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이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그런데 그 취약계층……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처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글썽요, 그 상세한 집행 수행 대상하고 절차를 보지 않고는……

○배준영 위원 지금 다 집행지침상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그러니까 집행지침에서 정해진 절차라든가 사전 기준들이 있는데요.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허위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셨다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여기 집행지침상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내역이랑 다른데 그거를 그냥 맞다고 말씀하시면 거짓말이지요, 그게.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제가 드린 취지의 말씀은 특활비 집행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기획예산처가 사전협의하거나 그거를 유권해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집행 절차 또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 기획예산처에서 유예됐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판단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본인이 점검했어요? 관련한 거 없지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담당 국장이 이 자리에 와서 말할 때 ‘위반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내가 직접 확인했더니 위반사항이 없습니다라는 확답을 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 자리에 와서 점검한 바도 없는데 그리고 사후에 검토한 바도 없는데 없다고 확답을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들 상대로 허위보고를 한 거라는 게 배준영 위원의 지적이고.

담당 국장이 와서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상하나 본인이 하지 않은 것까지 했다는 말을 해서 여기서 지금 비난을 받아야 되고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을 끌고 갈 이유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검토한 바 없잖아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 제가 사전에 확인한 바에 의한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았습니다. 알아들었고, 제가 이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백번 양보해 가지고 공개라는 게 대한민국 유사 이래 특활비 공개가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에 맞춰서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썼잖아요.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는데 목적에 맞게 쓰라고 저희 국회에서 결산해서 요구하는데 시정도 안 하겠다, 제도개선도 안 하겠다 하는 게 정부기관의 올바른 태도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잘못했으면 고쳐야지요. 여기 비목에 맞지 않게 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비서관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취약한 국민이나 취약계층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보듬는 것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배준영 위원** 저도 동의해요, 그것은. 그것도 동의합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기밀성이 있으면, 기밀성이 필요하다면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그것 받는 분들이 특수활동을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에 안 맞는다는 것을 이제 기획예산처에서도 확인해 주셨으니까, 총무비서관님도 이 지침을 잘 보시면 지침 위반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대로 시정하거나 아니면 제도개선을 하시면 됩니다.

○**朴芝源 위원** 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 삼으시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위로·격려금을 특수활동비로 주는데 받은 사람이 실제 수행자가 아니다 하는 지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가령 대통령비서실 참모가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그 참모가 취약계층에게 지급을 하면 대통령실 참모, 지급한 사람이 실제 수행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朴芝源 위원** 그런데 그 행위가 기밀성이 있다라고 하면 특수활동비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입장이시잖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朴芝源 위원** 그 부분 해설을 잘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 수행자라 함은 위로금을 받은 수령자인 취약계층이 아니고 격려금·위로금을 지급하는 그 공무원이 실제 수행자라고 해석을 하면 지침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그 수행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수석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참모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위로를 받는 국민이 누구냐 이런 것은 사실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총무비서관님, 박지원 위원께서 법기술을 발휘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꾸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특활비는 말이에요, 정보나 수사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돈은 공무원에게 주는 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무원에게 주는 돈이라고요.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적 개념도 없이 와서 이 문제점이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이 무조건 다 안 받는다고 오만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전문가 의견 청취할 때 거기서 쓰인 돈을 직원들에게 다 지급했습니까, 해당 청와대 직원들에게?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지요? 지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담회 무슨 돈이 직원에게 지급 안 된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에게만 주는 돈이 특수활동비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보면 무슨 정보 수집을 위해서 공무원이 활동하라고 비용을 지급하는 그 돈을 특수활동비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비공개 간담회든 무슨 간담회 하면 그 간담회 하는 공무원에게 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냥 일반 업무추진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 돈을 안 줬으면 이것은 특수활동비로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대통령이 위로금 줄 수 있지요. 어려운 사람 주는 것, 그것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금·위로금은 특수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급을 안 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준 돈 아니에요? 특수활동비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이 ‘내가 특수활동비를 공개했으니 나는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근본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산 때부터 제가 계속 지적한 내용인데 여러분은 그냥 ‘역대 정부 안 했으니 우리 공개했으니 잘했다’고만 답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한 전문가 조력, 전문가 조력 받으면서 그분들 회의 참석 비용 다 지급했지요. 그렇지요? 무슨 회의 많이 하잖아요.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480만 원. 그러면 전문가로서 참석한 분에게 회의 참석한 수당으로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그 조력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 돈은 특수활동비로 나갈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요 정부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그 소속된 직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지금 총무비서관님은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야 된다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적법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 저희가 파악한 사안에 대해서 특수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 돈 한 톨도 없어요. 맞지요? 공무원……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특수……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다른 걸 말씀하지 마세요. 청와대 공무원에게 지급된 돈은 한 톨도 없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고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그 돈은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전문가에게 돈을 주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특수활동비로 써서도 안 되는 돈이고. 그래서 잘못된 돈을 특수활동비를 쓰고 이걸 적법하다고 반복해서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내 설명이 맞지요? 감사원에서 이렇게 안 쓰는 거 맞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주로 받아서 지출을 하는데요. 다만 직원들이 받아서 직접, 예를 들면 식당에서 쓸 수도 있고 선물로도……

○**소위원장 유상범** 탄소리하지 말고. 저기서 직원한테 준 게 없다고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자꾸 탄소리를 해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제가 청와대 수석을 한 사람인데 저한테 준…… 그러니까 대통령 수석이 쓰는 특수활동을 위한 비용이 특수활동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해서 만나고 또 어떤 전문가 조력을 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주로 대체로 식사하거나 행사를 할 때 많이 쓰지요, 그런 거고.

이게 실제로 논쟁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특수한 누군가를 만나 가지고 조력, 의견을 구하는 자리 이걸 특수활동으로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있어요. 그 논쟁이 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청와대 수석이 움직일 때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내가 만나는, 수석이 만나는 사람이 이 존재가 드러났을 때 의사결정의 엄청난 왜곡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는 이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석이 누구를 만났다는 것이 공개되는 그 자체가 이미 상당한 국가적인 그런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 가지고 있는 그게 특수성이거든.

정부에 있어서도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 수렴을 위한 그런 활동을 과연 특수활동으로 볼 거냐라는 논쟁은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실제로 그 영향이 엄청, 그 활동이 공개됐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걸 특수활동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상황에서 결국 길어질 걸로 예상했는데 길어졌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여기 한 줄만,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나 아직 말 안 끝났어요. 기회 주세요.

○**김성희 위원** 끝나신 줄 알고……

○**소위원장 유상범** 정리를 하는데 좋은 말씀 맞습니다. 저도 특수활동비를 수석한테 준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까지 내역을 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 말씀대로 수석이나 비서관이 필요에 의해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받았을 때 모든 기관에서 누가 그 특수활동비 수령했는지 영수증을 씁니다, 청와대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찰에 있을 때는 항상 영수증을 썼어요. 그것이 개인에게 지급되고 그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판단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오늘 총무비서관께서 청와대 직원 누구에게도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돈들이라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

어요. 그러면 특수활동비로 써서는 안 되는 돈을 특수활동비로 잡은 겁니다. 아니면 그 절차라도 만들어 내셨으면 되는데 그 절차조차도 완전히 제대로 이행을 안 하신 거고요.

이게 결국 법원 판결 때문에 지금 이 이슈가 나온 겁니다. 과거에는 특수활동비 공개를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 명단 이런 것은 아니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미리 그것을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려면 정확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해 놓고 이것이 정확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논란이 길어집니다.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하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한 줄만 저도 읽을까 해서요. 적용 대상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특수활동을 하는 당사자인, 지금은 청와대지요, 판단해서 할 문제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 이런 것들은 정치권, 국민이 할 수 있는 몫이지만 지금 특수활동비의 적용 대상,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에 따르면 지금 청와대가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법한 영역에 들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기록에 남겨 놓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기록 잘 남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관들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70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이고요.

지적사항입니다.

청와대 이전을 위해 예비비 16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예비비 산출근거와 재원별 집행 내역, 대규모 공사의 계약·집행 내역 및 자산취득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와대 이전 예비비 161억 5800만 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보안상 필요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 선택이 필요하고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시설별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 내역 등 구체적인 집행자료를 공개하여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과 집행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 선택이 필요하고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본예산과 예비비의 재원별 집행·불용액을 구분하여 예비비의 적정 집행과 잔여재원 처리 내역을 결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2개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결산자료 세 번째 문항의 본예산과 예비비의 재원별 집행·불용액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1항과 2항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정리할까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지적 항목 문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걸 선택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본예산과 예비비의 재원별 집행·불용액을 구분하여 적정 집행과 잔여재원 처리 내역을 결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시정하시겠다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시정으로 동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3항에 대해서.

○소위원장 유상범 3항은 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든 제도개선이든 수용 불가 이런 입장이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청와대 복귀 예비비 161억 원에 대해서 세목별로 사용 명세서를 이미 국회에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결산서에 제출했다는 얘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그 정도 설명 듣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예비비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상세내역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라 이런 요구가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기존의 이전 정부하고 예비비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이것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세목별로 명세서를 결산서에 표기해서 제출한 것과 달리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상세한 사항의 공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정보라든가 또 개인,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글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비비라는 게 사전적으로는 공개하기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추경을 한다든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정산을 한다든지 해서 내역을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지요, 민주당 전임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은 결산이잖아요. 돈 다 쓰고 지난해에 지나간 것 지금 결산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안 내면 국회에서는 뭘 보고 합니까? 예비비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뭘 보고 하라는 거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사실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국가안보나 경호, 보안 등이 최상위로 관리되는 공간으로서 세목별로 세세하게 계약사항, 집행사항 같은 것을 공개할 경우에는 그것을 유추해서 경호상·보안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비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청와대 이전만 보자고요. 청와대 이전하면서 안 써도 될, 물론 어느 정도 써야 되겠지요, 그동안에 비어 있고 다른 용도로 하던 것을 다시 대통령의 집무공간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예비비를 쓰는데 161억이 맞는지, 50억 정도에서 끝낼 수도 있는 건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아, 대통령이 알뜰살뜰 살림 잘 살았네’ 이렇게 평가할지 아니면 ‘짜게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호화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판단을 국민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자료를 주셔야지 볼 수가 있잖아요,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눈감고 국회는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비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라는 공간이 경호상 또 보안상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배준영 위원** 총무비서관님, 예비비 161억 원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용산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용산이나 청와대나 어디 있든지 가치판단을 하기 전에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서 혈세 161억 원이 더 쓰인 거예요. 그것은 맞지요? 안 들어갔으면 161억 원 안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것 아닌데요. 그냥 용산 썼으면 161억 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청와대로 다시 이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안 들어가도 될 돈 161억 원이 더 써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된 요소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국회에서 사후에 검증하려는 요구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내부 도면 보자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비가 정말 적정하게 돼서 국민주권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기회인데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덮어 버리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셨다고 그랬는데 세목별로 총액만 낸 것 같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활비도 그렇고 최초로 공개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보안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공개하실 것은 공개해 가지고 우리 정부는 이렇게 알뜰하게 해 가지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 다시 되돌아가서 혈세를 썼지만 절대 낭비가 아니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으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사실 161억을 심의해서 주신 위원님들 예산 배분 원칙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필요한 곳에, 사실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오랫동안 빈 곳으로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업무공간 그다음에 의

전공간, 행사공간, 사무공간 이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161억을 적재적소에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모두 다 경쟁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도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100% 다 공개경쟁입찰이었어요?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 이정도 공개는 아니고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한경쟁입찰을 했다?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 이정도 공개입찰에 부쳤는데 응찰 업체가 없는 관계로 우수한 업체들을 선별해서 상위 그룹에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제한경쟁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1건도 없어요?

○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 이정도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저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용산으로 급하게 옮기겠다라고 국방부 내쫓으면서부터 이 모든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청와대 76년 만의 개방행사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손에 붙은 꽃을 쥐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청와대를 들어가던 기괴한 광경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예비비로 썼던 돈이 161억 원보다 한 40%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쓰지 않고 사실은 그냥 청와대에 계속 있었으면 청와대에 계속 있었겠지요. 그러면 국방부도 옮길 필요도 없고 그것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들었던 비용, 저희가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추정하지만 국방 쪽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서 1조 원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쓰여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1억 원을 낭비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낭비한 것을 161억 원으로 겨우겨우 막은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우리가 평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이런 예산의 낭비는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사안들 그리고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범위에 맞춰서, 청와대에서 국회의 요청에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맞춰서 잘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잠깐만 김성희 위원님, 하여간 지금 비서실에서 한 대로 시정과 제도개선 불수용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얘기지요?

○김성희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한 번 하시고……

○정태호 위원 윤석열 대통령 때 대통령실 수리 관련해서, 공사 관련해서 21그램 있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정태호 위원 그때 아마 저희 당을 포함해서 야당에서 그 공사 관련된 내역들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정부 때 제출했던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지요, 잘잘못은 별개로 하더라도.

실제로 대통령실을 옮겨서 한 3년 동안 청와대를 사용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공사를 더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는 매일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데……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도청이 가능하지요, 현대 기술로. 그런데 그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리창에다가 특수한 시설들을 설치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데 이런 것을 구체적인 재원, 사업 내역별로 이것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실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화 내용들도 다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전 세계 첩보기관들이 광화문 주위를 거의 매일 배회하듯이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청와대라는 특수한 시설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의들이 외부와 차단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어떤 사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공사를 하는데 어떤 재원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그것은 당연히 차단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도 아마 대통령비서실에서 국회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들이 지금 예비비와 관련된 국회에서 시설별 공사·계약, 물품구매 내역 이런 집행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산으로 이전한 것을 다시 청와대로 되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용산 대통령실 가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아니지만. 가봤는데 거기서 원래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갔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가 보면 그게 국민한테 되돌려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격리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청와대는 실제로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 때 공개도 다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오히려 현재 위치로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청와대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저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 것을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청와대 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은,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로 갈 수는 있는데 그것

자재를 제가 가치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161억 원이 더 들었으니까 그게 당당하다고 그러면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하는 게 국민주권정부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충언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할 텐데,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국민주권정부의 정신에도 맞고 바람직하다고 해서 청와대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배준영 위원** 지금 대통령님 용산에 사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청와대 관저로 왜 안 가고 계세요? 청와대 관저로 가실 계획이 있는지, 안 가고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가는지 그거 좀 밝혀 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안 맞아요. 청와대는 다 가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정작 대통령님은 왜 관저로 안 가십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위원님, 지난 예결위 때 저희 수석분들이 나오셔서 가지고 답변을 한번 드린 사항인데요 현재 관저 공사가 아직 다 종결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는 관저가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빨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다 그리고 청와대 시설비다 그러면 예비비로 청와대 시설비 쓴 거는 다 비공개다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사업도 보니까 기존 예산하고 돈이 섞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 할 때도 청와대 시설비 일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 어느 정도 공개는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와 차이를 둘 필요는 없고. 예비비라는 게 그거잖아요.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소요를 국회 의결 없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권한이지요. 그렇지만 사후에 국회 결산에서 확인도 안 해도 되는, 국회 확인 절차도 면제시켜 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예비비를 쓴 내역은 사후에라도 국회에서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니까 특수성이 있다고 일부 인정은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 낭비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집행내역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할지, 청와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비비를 조금 더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이 사안은 앞의 특활비 공개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추가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공개와 관련해서 시정요구유형을 세 번째 부분은 총무비서관께서 동의 하셨고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할 게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3번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시정이 아니고 제도개선으로

좀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 자료는 법정서식으로서 거기에 맞춰서 다 결산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국민의 힘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하시고 또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보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계자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2시간이 넘어서 일단 경호처 하는 것을 1부 마지막으로 하고, 이거 끝나고 나서 잠시 휴식을 가진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저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또 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해서……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윤기현 대통령경호처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윤기현입니다.

○대통령경호처운영관리본부부장 손영준 대통령경호처운영관리본부 부장 손영준입니다.

○대통령경호처운영관리본부과장 김기수 대통령경호처운영관리본부 과장 김기수입니다.

○대통령경호처운영관리본부 신민석 대통령경호처 신민석 경호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는 총 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74페이지, 연번 1번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2년 전부터 예정된 경호작전차량 교체를 위한 계약을 2025년 6월에 체결하고 해외 제작업체의 생산능력·납기 준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중간 점검도 충분히 하지 않아 자산취득비 14억 원을 이월했고 자산취득비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해외 제작 장비의 업체 생산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계약 후 제작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납품 지연에 따른 자산취득비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경호처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윤기현 대통령경호처는 시정요구사항을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주의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역시 경호처답게 화끈하네.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국회 사무차장 김상수입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임종수 국회 기획기조실장 임종수입니다.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정상훈 관리국장 정상훈입니다.

○국회사무처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입니다.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박민호 운영지원과장 박민호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국회에 대해서는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열린국회행사지원 사업과 국회청사유지및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열린국회행사지원 사업에서 2025년 신규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청소년 등 경내 야영 프로그램 예산 1억 5000만 원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이를 변경하여 12·3비상계엄 해제 1주년 행사를 추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회청사유지및관리 사업에서 12·3계엄 해제 상징석 설치, 포토존 조성, 자연석 이동 및 글새김, 조명 설치, 타임캡슐 구매 등에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사업 취소와 예산의 변경 집행을 지시·승인한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 징계할 것. 여기에 국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의 사업 목적과 내역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규 조형물, 기념시설, 상징공간 또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행사 등을 기존 시설관리비, 행사비 등을 활용하여 임의로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것. 여기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 사업변경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에 사전 보고하는 등 국회 공식적인 통제절차를 마련할 것. 여기에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하고 국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당초 예산, 취소·변경 사유 및 금액, 사업의 실제 집행내역을 함께 명시하여 예결산의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회청사유지및관리 그리고 열린국회행사지원과 같은 각 세부내역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욱이 청소년 등 야영 프로그램의 경우 그때 당시 폭염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취소한 바 있습니다.

사무처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대로 예산의 사업 목적과 내역 취지대로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징계사항을 제외하고 지적해 주신 취지를 반영해서 내용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시정요구사항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내용 세 개가 다 달라요, 시정이라도 그 요구하는 내용들이. 두 번째, 네 번째는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세 번째 것은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달라서 통합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두 번째, 네 번째 것은 같이 의견을 주시고, 세 번째 것에 대한 의견 이렇게 시정요구유형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 예산 변경 집행의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청사유지및관리 그리고 열린국회행사지원 내 세부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징계사항은 빼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는 저희가 통합해서 제도개선을 시정 사항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시정으로 수용한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예, 내용은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의 사업 목적과 내역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행사의 임의 추진을 지양하는 한편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당초 예산편성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을 함께 명시하는 등 예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토록 돼 있는데 사실상 세부사업 범위 내 집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운영위에 사전 보고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도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무리하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요청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그러면 사무처 얘기는 2번, 4번은 시정으로 하고 1번, 3번은 삭제해 달라 그런 얘기인 거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첫 번째, 청소년 등 경내 야영 프로그램 이것 사업 취소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그때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와서 야영을 하는 사업이라서 안전 문제로 부득이하게 사업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때 온도가 몇 도였는데요?

○국회사무처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당시에 계속 폭염이, 예년보다 20% 이상 폭염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들이 연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계약 취소로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건가요?

○국회사무처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예, 이미 집행된 금액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실행된 금액은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였어요?

○국회사무처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9월 초였습니니다.

○배준영 위원 9월 며칠이요?

○국회사무처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9월 5일, 6일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때 온도가 어떻게 됐는데요?

○국회사무처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이후에는, 이 결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한 달 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전 기준으로 폭염이 계속 이어진다는 보도들이 있어서 안전 문제로 그렇게……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5일, 6일 날 온도가 어떻게 됐나니까요.

○국회사무처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그건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지금 체크해 보세요.

○국회사무처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예.

○배준영 위원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사실 시설 유지·보수 하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다른 예산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계엄 해제 상징석, 포토존, 자연석 이동 및 글새김, 조명 설치, 타임캡슐 구매. 전체가 다 상관없는 것들인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 국회 본관에도 이렇게 새기고……

차장님, 이렇게 보면 하여튼 국회의 예산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킨 거고 그냥 시쳇말로 마음대로 해 버린 건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사실 저희가 국회청사유지및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안의 세부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통상적인 사업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배준영 위원 이게 통상적인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이 통상적인 사업을 하라고 지시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 취소한 건 폭염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시한 분은 누구입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그때 당시 의장님께서 당시 양 교섭단체 부의장님하고 원내대표단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협의해 갖고 다 동의하셔 갖고 추진하신 거예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상징석 설치에 관해서……

○배준영 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징석, 포토존, 글새김, 조명 설치, 타임캡슐.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그때 당시 주호영 부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 주호영 부의장님이 다 동의하셨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그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청사 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국회 설치물하고 이런 걸 했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배준영 위원 의장님 지시사항이라서 불가피한……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의장님 지시사항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시 사업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이 정도의, 말하자면 국회의 외관에 큰 변화를 줄 정도면, 사실 국회 본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누구나 동의하는 말이지만……

이 국회 건물이 세워진 게 천구백몇 년이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76년입니다.

○배준영 위원 76년. 그러면 50년 만에 이렇게 큰 변화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현관 앞에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걸, 저는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서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서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짚고 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 하셨어요?

○배준영 위원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통제 절차, 그러니까 징계 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징계하려고 그러면 최고책임자가 징계를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세 번째는 적어도 사업변경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 국회에 공식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삭제해 달라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과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공식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삭제하라고 하는 거면 앞으로도 이렇게 막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을 이것은 받으셔야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그런데 이게 사실상 사업 전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돼 있어서 통상적인 국가재정법 체계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국가재정법……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왜냐하면 예산을 전용·이용을 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 예산집행 입장에서 좀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잠깐만, 이것은 재경부에서 말씀하시겠어요, 기획예산처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차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입니까?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말씀하신 게 맞는지를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집행 관련해서 사전적인 절차를…… 이 부분은 현행 예산집행지침 일반적인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소관 부처 또는 집행하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아니면 재량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본다면 그 규정을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사전적으로 협의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정 절차상 좀 예외적인 절차를 만드는 거라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준영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책임지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안 한다는 것은 글썽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할게요.

배준영 위원께서 실무자들에게 징계를 할 것이라고 요구했는데 보니까 지시 책임자는 빠지고 실무자가 책임지는 모양새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여서 삭제 요청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인데……

이종욱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입장을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서?

○**이종욱 위원** 저는 징계 빼는 것은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징계 부분은 삭제하는 거고 나머지는 시정에 동의한다는 건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두 번째, 네 번째 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태호 위원** 세 번째는? 세 번째도 시정 아닌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세 번째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정태호 위원** 삭제해 달라? 이것은 삭제고.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서 제가 나눠서 하는데 두 번째, 네 번째는 시정요구를 수용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첫 번째 사안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히 징계까지 가는 것은 지나치다고 해서 이것은 부처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 동의했고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부분은 시정을 수용했고 시정 수용을 하면서 그 문구 정리를 요청했는데 사실상 두 개를 하나로 문구 정리가 됐고.

주 위원, 정리됐지요?

○**전문위원 주성훈** 지금 너무 빠르게 말씀하셔서 가지고 제가 못 적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메모한 것을 주 위원한테 전달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메모한 게 있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상수** 예, 있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전문위원 주성훈**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의 사업목적과 내역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행사의 임의 추진을 지양하는 한편 결산사업설명자료에 당초 예산편성 내역과 실제 집행내역을 함께 명시하는 등 예·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두 개, 두 번째, 네 번째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정리한 거니까 이것은 이대로 해서 시정요구 유형 중에서 시정하는 걸 수용한 걸로 정리·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분리해서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어차피 삭제를 해 달라는 요청이고, 사무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거지요, 삭제 요청을?

○**김성희 위원** 기획예산처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좀 정리된 의견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으로 보류를 요구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입장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블드모트를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자라고 소설에 나오지요. 배준영 위원께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자를 말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말씀 안 하신 것이 그래도 국회의원이 이 안에서 지키는, 우리가 스스로를 자제하고 국민을 지키는 노력이 아닌가. 그래서 갈등을 더 야기시키지 않는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얘기해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국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사무총장 이석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조영호 기획조정관 조영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장 문은현 안녕하십니까? 윤지과장 문은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이현아 안녕하십니까? 결산 담당 이현아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총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고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북한인권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북한인권 개선 사업은 최근 수년간 예산이 약 1억 5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사업 목적에 비해 정책 추진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지원환경 변화와 북한인권 비정부기구의 재정 여건을 분석하고 북한인권 개선 사업의 적정 규모, 정책개발·국제협력·실태조사·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적 지원 공백에 대한 대응 방향을 포함한 북한인권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도 있는데?

○전문위원 주성훈 제도개선까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인권 종합 지원방안 마련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제도개선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보고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 사업으로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2027년도 예산심사 전까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것을 수용하셨거든요,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위원장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관련해서는 이게 국민주권정부의 평화공조 기초하고 상호 존중 기반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남북인권협력 추진은 그런 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라는 문구를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북한과 상호 존중한다는 뜻을 반영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어디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김성희 위원 맨 앞에 넣으면 되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과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김성희 위원 예.

○이종욱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상호 존중해야지요. 그런데 시정요구 하는 기본 취지는,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위원님들의 의견은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물론 대북정책이나 남북교류 뭐 이런 것하고 별개로 인권위원회잖아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이라든지 국제협력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수년간 예산도 1억 5000밖에 안 된다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고 더 많은 연구 하고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따야 되는데 그런 의지도 안 보이고 활동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구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한국 인권위원회가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말이 나와요. 여러 가지 지원도 축소되고 그래서 북한 인권 NGO 들도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 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외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NGO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고 또 국제협력 기반도 점차 확대해 가야 된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구보다 관심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기관 아닙니까?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이런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해 달라는 거잖아요. 맞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저는 시정, 주의를 하면 더 강하게 제 의지를 드러낼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충실히 해 준다는 전제 조건하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저도 운영위원회에 있었는데 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님,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영토로 되어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챙겨야 될 인권은 북한까지 당연히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 몰라라 남 얘기처럼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게 운영위 때부터 제가 수도 없이 지적을 해 왔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인품 좋으신 이종욱 위원님은 제도개선 말씀하셨는데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이석준 아닙니다. 위원님들 의견대로 저희가 국제협력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매년 지출구조조정으로 조금씩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내년에는 로드맵을 마련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여기 기획예산처하고 재경부도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이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은 안 합니다마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외적인 메시지로서 되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당에 따라서 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저는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적 메시지는 상당히 많이 고민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공식적인 문구로 나갈 때는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서 좀 조정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완성된 문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인권위에서 제출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좌파와 우파가 보는 시각의 극명한 차

이가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지요.

평화를 얘기하면 인권과 관련된 의사표명에 대해 신중하자는 입장이고, 그러나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국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 우파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께서도 시정이 필요하다, 반복적인 부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니 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으시고 또 제도개선과 관련되더라도 문구는 좀 정리하자 하는 입장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계속 논의해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성희 위원과 정태호 간사 두 분이 문구와 관련해서 어떤 요청을 하셨는 데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 나중에 그 의견을 한번 취합해서…… 우리 어차피 소소위를 열어야 되잖아?

○전문위원 주성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그 전에 소통을 하셔서 인권위의 문구 수정 수용 여부 그 다음에 의견 제시 여부 그런 걸 받으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마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육부차관 최은옥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설세훈입니다.

○교육부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입니다.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교육부 예산담당관 김아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교육부에 대해서는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3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보통교부금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학교영양사는 교육공무원 1유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명절휴가비는 2유형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영양사의 합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를 학교영양사 유

형에 맞는 1유형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하고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두 가지 유형 중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문구 후반부 조금만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하고 16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하고 집단임금교섭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내용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고 아직 결정이…… 노조와 교육부, 교육청이 협의된 사안이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24년에도 집단임금교섭 결과 노조의 요청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185만 원 이렇게 정해졌고요. 26년에도 노조가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교섭을 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교섭은 언제 하시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섭은 금년에는 9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 교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문구에서 강제성을 둘 경우 교섭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문구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수정의견을 말씀하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정의견은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원 영양사의 합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를 학교영양사 유형에 맞는 1유형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같고요, 그다음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왜 노조가 이렇게 주장하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직종을 좀 우대하는 그런 게 노조로서는 어렵습니다, 집단으로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여러 직종을.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현실을 모르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부기해서 짧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교육부차관 최은옥 왜 그렇게 하는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직종이 여러 가지, 10여 개 직종이 있는데……

○소위원장 유상범 그건 압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을 한꺼번에 집단으로 저희가 임금교섭을 하기 때문에 노조가 어느 특정 유형을 더 유리하게 하거나 이러기 어려워서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는 사서, 전문상담사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24년 임금교섭 결과 전체 185만 원 동일하게 했고요. 25년 결과는……

○**정태호 위원** 아니아니, 영양사하고 사서하고 전문상담사는 2유형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금 지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사만 1유형 기준으로 지급받으면 나머지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직종 간에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유형 구분 없이 2유형 100%를 전체 적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으셔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해가 안 되네. 다른 것은 다르게 평가를 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하향 평준화해서 같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집단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노조는 1유형임에도 불구하고 2유형으로 다 통일시켜 달라 이런 취지네요,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1유형에 도대체 몇 개…… 여기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만 있는데 실제로 1유형에 몇 개 직군이 있습니까? 이게 다인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사 대체 직종이 1유형이고요. 그래서 이 3개이고 2유형에 더 많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이것 3개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정태호 위원** 2유형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1유형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런 것 계산해 봤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 기본급은 1유형, 2유형이 다르고요. 명절휴가비를 2유형 기본급의 100%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1유형과 2유형의 기본급은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배준영 위원** 잠깐만, 그러면 1유형이 얼마 받고 2유형이 얼마 받는다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본급이 25년 결과가 1유형은 234만 원 정도고요, 2유형은 214만 원……

○**배준영 위원** 2유형이 214만 원,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결국 20만 원 그 차이를 말하는 거네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이종욱 위원** 234만 원인데 명절휴가비 기준으로 할 때는 214만 원 기준으로 한다고 그 말이에요, 일단 현재?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게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교섭을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234만 원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종욱 위원**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에 1유형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그러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1유형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지적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1유형 기

준을 기본급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요. 지금은 2유형의 기본급을 적용했는데 1유형의 무엇을 지급할 것인지는 또 다른 교섭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종욱 위원** 어쨌든 같은 이야기겠지요. 하여튼 올려 달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시정요구사항은 올려 달라는 건데 지금 교육부 입장에서는 노조와 교섭을 해야 되는데 노조는 2유형으로 올리지 말고 그냥 유지하자 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이종욱 위원** 어쨌든 요구사항은 올려 달라는 거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특정 직종만 올려 주지 말고 일괄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 올해 9월에 다시 교섭을 해 보면 금액은 올려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적용하겠다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 노조가 영양사 노조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노조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체 십여 개 직종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임금교섭을 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그 10개가 뭐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조리원, 행정실무사, 사서실무원, 초등돌봄전담사, 교무실무사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1유형이 숫자가 좀 적고 2유형이 더 많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3명은 다 똑같이 2유형 기본급을 기준으로 받고 있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이종욱 위원** 그런데 왜 영양사만 똑 띄워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국회의원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이종욱 위원** 3개를 같이해야 되겠네요. 하나만 이렇게 할 건 아니네. 그렇지요? 아니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지만 3개만으로도……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으로 임금교섭을 하기 때문에.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니까……

○**정태호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는 교육공무직원 유형으로는 1유형인데 이 세 유형은 지금 2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영양사만 1급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못 하겠다 이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정태호 위원** 그러면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가 2유형으로 받고 있는데 이 3개를 다 1유형으로 명절휴가비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노조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요, 그래도 노조는 전체 직종이 뭉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1유형, 2유형 구분은 뭐 하러 해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게 집단이 갖고 있는 맹점을 대체로 보여 주는 거지요.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제가 보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제도개선을 부처 의견으로 동의했으니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교육부에서 제안한 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할 것’이 정도로 정리해 주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정태호 위원** 이것은 전교조하고 교사 노조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 노조랑 교섭을 합니다.

○**정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위원장 유상범** 전교조에서 관심이 없는 내용이지요. 차관님, 내 얘기가 맞지요? 전교조는 관심 없는 내용이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요,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소위원장 유상범** 깊은 관심은 없지요.

정리합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는 교육부에서 제안한 문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박지원 위원님.

○**朴芝源 위원** 영양사 외에 다른 1유형들도 다 같이 넣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요.

○**소위원장 유상범** 여기에 보시면 국회의원들만 할 수 있는 시정요구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태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이 유형은 누가 구분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구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1유형·2유형 구분은 일단 교사가 있는데 교사가 부족할 경우에 대체하는 직종을 1유형으로 했고 나머지는 교사가 없는 일반 직종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교육청에서 구분한 것으로 저희는 압니다.

○**정태호 위원** 교육청에서 구분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유상범** 이거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도 조심스러워하는 위원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8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글로벌랩 거점형 신규과제 선정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과 피평가자 간 장기간 공동연

구 관계가 있었음에도 해당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글로벌랩 거점형 신규과제 선정평가의 평가위원 구성 경위, 이해상충 여부 확인 과정, 제척·회피 규정 준수 여부 및 평가위원별 점수 분포 등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평가위원과 피평가자 간 이해상충 여부가 확인될 경우 해당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결과를 재검증하거나 중립적인 평가단을 통한 재심의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검토할 것.

여기에도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해관계를 평가위원 선정 단계에서 자동으로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제척·회피 제도를 개선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 어려운 주문 사항이긴 하네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는 시정요구유형으로 두 가지 중에 제도개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더니 R&D 지원이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과기부법입니다—이 법의 시행령 그다음에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 법과 시행령과 지침에는 위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 시정 요구하신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과기부랑 협업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갑자기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서……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이 신규과제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시행규칙, 지침 등에 위배한 게 없다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평가위원과 피평가자 간의 공동연구 관계가 있는데 평가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 지침은 3년간 공동연구를 했느냐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년 내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 기간을 늘린다고 하거나 하는 것은 제도개선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여기 민원이 들어간 건 그전에 공동연구한 사람이 들어갔다 이렇게 아마 민원이 들어간……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허영 위원이랑 같이해서 한 번 더 논의해서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가자인 P 모 교수하고 피평가자인 B 모 교수가, 예를 들어서 기초연구실지원사업도 공동 참여하고 논문도 9건이나 같이 쓰고 그다음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으로 공동 선임되기도 하고 한국연구재단의 특정 분야 책임연구위원을 한 사람이 하고 그 직전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맡고 이래서 이게 3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말인데 4년만 가도 막 논문 같이 쓰고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긴 한 건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보류하셔서 한번 직접 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류를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하시지요, 김성희 위원님.

이건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중요한 것은 방금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은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서 피평가자까지 평가에 수시로 참여하는 굉장히 오염이, 외려 부패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도 제기되니까 한번 그 구체적 사례를 공유시켜 주세요.

○김성희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주 위원,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전달받아서, 소소위에서 어차피 할 거니까 저희 소소위 위원들에게 전달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사안은 결정을 보류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차관님 말씀하실 때도 이해가 잘, 허영 위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은 데 대한 답은 아닌 듯해서 내가 좀 의아했었는데.

다 끝났나요? 또 있나, 교육부?

○전문위원 주성훈 하나 더 남았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14페이지입니다.

연번 12번이고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과도한 규모의 이월 및 재이월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교육부는 장기 이월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전수 점검하고 재이월·재재이월 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 편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게 있는 데다가 25년도는 의정 갈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시설공사 지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서 앞으로 집행 부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시겠다는 얘가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제도개선을 요청하셨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든지, 단순히 ‘우리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보고로는 제도개선 보고가 아니에요. 그걸 참고하셔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금년 3월에 이 시설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또 그런데 앞으로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랑 같이 좀 협업을 할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도개선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어차피 이것 신규 예산 때 분명히 또 지적이 될 텐데요, 9월 중에 제도개선안을 준비하셔서 일단 보고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선택하시든지, 그걸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9월 중에 우리 결산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요.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글썄, 국립대병원이 저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사정은 알겠는데 어쨌든 이삼 년간 재이월되고 재재이월돼도 모르쇠로 그냥 계속 예산 반영을 했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사업과 예산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재이월이 발생한 6개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에 총 395억 원이 본예산으로 편성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전액 교부하지 않고 교육부 차원에서 이월 처리로 했고, 그리고 특히 지난 2차 추경 당시 적자 국채를 찍어 내는 상황이었는데 교육부도 감액 추경사업을 발굴했는데 한 톨도 감액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썄요, 국립대병원 사업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의를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은 이 정도 되면 반복되는 재재이월이니까 단순 제도개선이기보다는 주의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배준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특정 관계자에 대한 주의는 아니고 기관에 대한 주의 의견이지요?

○배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태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부로 넘어가 가지고 주의를 주는 의미가 있어요?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도 의미가 특별히 없지만……

○정태호 위원 그런데 이미 제도개선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복지부하고…… 어차피 이 내용이 복지부에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보고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실효적인 것 같은데요.

○배준영 위원 그러면 감사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차관님. 여기 병원 시설을 담당하는 계나 과가 따로 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이종욱 위원 병원 시설만 담당하는 계나 과가 따로 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 과가 많지가 않아서요 병원 전체를 담당합니다.

○이종욱 위원 한 과가 있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시설만 담당하는 과는 없고요.

○이종욱 위원 병원 전체를 담당하는 게 뭐 담당하지요? 병원 지원?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병원 지원.

○이종욱 위원 대부분 시설비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예산은 시설비가 대부분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그것 복지부로 넘어갑니까, 그 사람들?

○교육부차관 최은옥 일부가 갑니다.

○이종욱 위원 일부가?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하면 되네요, 제도개선하고 주의하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저희가……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종욱 위원님 주의?

○이종욱 위원 예, 주의 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여기……

○이종욱 위원 아, 했습니까?

(웃음소리)

제도개선하세요. 다수결로 하세요.

○배준영 위원 이게 다수결이 아닌데……

○정태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주의로 하면 그냥 끝나 버리잖아요.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거는 뭐……

○정태호 위원 제도개선을 요구를 했으니까 복지부하고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약속한 것은 약속한 거고 보고는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 정도 되면 한 번은 기관이 주의를 하면서 관계자들한테도 각성을 줘야지 이게 제도개선이 마치 그냥 면피용으로 진행되는 이 구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육부에서 9월 중에 복지부와 협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결산 소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도개선으로 결

정을 하겠습니다.

대신 가볍게 보지 않으셔야 되는 게 여당 위원님도 야당 위원님들도 사실은 이렇게 반박된다면 예산에서 분명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인내의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보고는 다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 들어오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써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이광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 최수진 사무처장 최수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운영지원과장 최우성 운영지원과장 최우성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총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마 점심 때부터 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래도 빨리 저녁 먹기 전에 끝난 걸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옥하지 마시고.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이광호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래 대기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외교통일만 남았는데 어차피 이건 저녁시간에 다 끝낼 수가 없으니까 오

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만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외교부1차관 박윤주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2차관 김진아입니다.

○외교부기획조정실장 김정환 기획조정실장 김정한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세 분만 들어오셨어요?

○외교부동북·중앙아시아국장 남진 외교부 중국 담당하는 동북·중앙아국장 남진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외교부에 대해서는 총 3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4건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연번 25번 동북·중앙아시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는 과거 결산에서도 집행 변동성과 집행부진이 지적된 바 있음에도 2025년에도 예산현액의 23.6%가 불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외교부는 실제 교류수요와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필요성, 추진방식 및 사업구조를 재검토하고 지방정부와의 교류 취소 시 대체 가능한 협력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할 것,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시정요구유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에 대해 의견을 문의해 주신다면 가급적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말씀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최근 집행률 등을 고려해서 27년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내역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시다만 그간 집행부진의 이유가 한중 관계가 복원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을 토대로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에서는 주의로 시정요구유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배준영 위원 주의로 해서 개선을 하신다니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나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나아지는지?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허락하시면 담당 국장이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말씀하세요.

○외교부동북·중앙아시아국장 남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중국 중앙정부 위주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에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새롭게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불법 조업 단속 관련해서도 그간의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정부, 불법 조업 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중국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여러 가지 현안들 불법 조업, 특히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우리 독립 사적지 관련해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외교부 주의를 수용하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결정을 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문구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문구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 낼 게 있는가요? 아니면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외교부?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47페이지입니다.

연번 28번 2025 APEC 의장국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외교부는 동 사업에서 내역사업 간 예산을 대규모 조정하고 특히 대국민 행사 등 홍보 내역사업의 일반용역비 39억 2400만 원을 정상회의 주간 회의 개최 내역사업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그리고 39억 2400만 원의 조정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외교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역사업별 목적과 산출근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내역조정 시 사업내용과 조정 사유·금액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 시정과 주의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외교부는 결산사업설명서에 내역조정 사항을 기재할 때 추상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변경 대상 사업과 조정 금액의 산출근거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28번 시정요구유형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에 관해서 의견을 물어주신다면 가급적이면 저희는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에서는 주의로 해 달라는 부처 의견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추가 설명할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허락해 주시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말씀하세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조정 규모가 굉장히 큰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 저희가 내역사업 조정 관련 내용을 결산사업설명서에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행 규정상에 동일 세부사업 내 동일 목의 내역사업 변경 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승인하에 변경을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존중해서 주의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먼저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같은 목 간에서는 기관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그걸 확인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그거는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게, 합리적인 설명이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이것도 주의 정도가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국민 행사 등 홍보 일반용역비 39억 2400만 원을 정상회의 주간 회의 개최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이게 보니까 나중에 홍보로 예산을 많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글썄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방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비로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뭘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사실 61억이 배정이 되었었고요. 그중에서 39억을 정상회의 주간 회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담당 기업인 인터컴이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기관장 재량으로 조정을 한 경우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홍보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배정했어요? 그거 설명을 해 주셔야지. 61억 홍보비는 제가 봐도 황당한데?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APEC 사업이 워낙에 관심이 크셨고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높은 금액으로 책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외교부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증액을 해 버린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그런 걸로 저희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국제경제국심의관 박정오 국제경제국 심의관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 국회에서 일단 홍보비로 증액을 해 주셨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찬장 야외 문화 행사 그리고 야외 경관 개선 그리고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 이런 부분으로 증액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대국민 행사 홍보 용역비에서 정상 회의 주간 회의 개최 용역비로 그 취지를, 이렇게 변경을 할 때요, 정상 행사 역시 만찬장 조성 비용으로 사용은 됐습니다. 취지대로는 사용이 됐고요. 그런데 만찬장이 좀 변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야외 행사 같은 경우가 시행이 안 됐고요. 그 대신에 또 다른 그런 여러 행사들로 사용이 돼서 취지는 부합되게 사용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좀 이루어졌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저 정도면 설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으로 보이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고 시정요구 문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48페이지입니다.

연번 29번 국제개발협력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이 편성된 346개 사업 중 착수연도 집행액이 전혀 없는 사업이 58개, 집행률 10% 미만인 사업이 111개, 50% 미만이 148개로 착수단계부터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고—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집행이 지연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으로 증액하는 사업 간 예산조정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국별 협력사업 수행 시 수원국 협의, 계약·조달 등 실제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으로 집행부진 또는 예산조정이 발생하는 사업은 사업기간 및 연차별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29번의 시정요구유형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문의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개도국에서 다년간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도국 내에서 정세가 급변하거나 또는 행정 역량이 예상보다 떨어지거나 또는 환율이 변동하는 등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예산 체계 안에서 좀 조정이 불가피

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사업별 집행 가능성 검토를 최대한 강화를 하고 사업 간의 전용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개선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예산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모두 종합해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보고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보고를 받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21년서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이랬는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에도 비슷했습니까?

○외교부개발협력정책관 강효승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 강효승입니다.

KOICA 사업 할 경우에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 예산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차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 전 주기에 있어서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 더 예산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예산 집행률 부분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본 거는 지난 5년간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는데 그전의 5년, 그전의 5년도 다 이런 식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외교부개발협력정책관 강효승 집행률이나 예산 조정 이런 부분들은 개도국 사업에서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다음에 저희 국회에 보고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에 우리가 ODA 사업을 시작하면서 추세를 한번 위원들이 볼 수 있게 다 같이 넣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개발협력정책관 강효승 예,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건 차관님이 답하셔야 돼.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개선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에 대한 다른 위원들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취약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왜 예측을 못 했냐라고 조여들기 시작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안 해 버리면 되거든요. 예산을 줄이고 위축될 텐데 그게 우리나라 외교에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지적할 건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만들어 두어야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게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렇게 통제가 잘되지 않는, 표현이 좀 외교적이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예결산이나 행정이 우리나라 만큼 원활하게 돌아 나가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교류하고 그런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걸 만드는 것만으로 해도 저는 들어간 예산 대

비 효과가 충분하다고 봐서요. 노력은 하시되 위축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외교부의 시정요구사항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는 건 동의하신다 이런 취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건 그렇게, 그것도 확인이 안 돼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배준영 위원 훌륭한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ODA 사업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적다고 늘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건 아닌데 문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 추진 지연이 된다면 분명히 업무 수행 과정 프로세스에 뭔가 우리가 변화를 주면 조금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준비하실 때 어떤 보고서를 위한 보고가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 확실히 해결책을 잘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 시정요구사항의 문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이 없으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50페이지입니다.

연번 31번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중 일부가 추진 과정에서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행사에 집행된 예산과 환불액·취소 수수료 등 재정손실 규모를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취소된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에 이미 집행된 예산액과 환불·취소 수수료 등의 현황을 공개하고 관련 계약 취소에 따른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시정요구유형 주의를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취소된 해외순방 행사에 이미 집행된 예산액과 환불액·취소수수료 등의 현황 공개 이 부분은 시정요구 내용에서 제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말씀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정상 및 총리외교 일정은 임박해서 최종 결정되는 경우로 인해서 취소수수료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취소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 행사의 예산집행액 공개는 상대국과의 외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예산액을 공개하면 외교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논리적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공개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에 보고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이게 대개는 3급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예를 들면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에 A국가와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 또 B국가와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관계를 중시하는 정도에 따라서 물론 현지 사정, 여러 가지 물가도 반영이 되겠지만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가중치가 비교될 수 있는 측면도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공개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려다가 어떤 행사가 취소되었는가, 외교적으로 그런 부분도 드러나는 측면도 있고 이래서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정상 행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물론 총액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정상회담 예산 규모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내역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수립되어 왔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소위원장 유상범** 22대 정부 들어와서 관행은 워낙 많이 깨져 가지고……

○**이종욱 위원** 유상범 위원장님이 정하시면 되겠네요.

○**배준영 위원** 주의는 받고 공개만 그건데……

○**소위원장 유상범** 갑자기 이분들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의견 좀 주세요, 문구를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는지.

○**이종욱 위원** 저는 설명을 들으니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런 것도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공개를 안 하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고려변수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안 된다면 기회비용이나 이런 개념 아무것도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러시는 건지,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은 통제되고 있다든지 그런 말씀을 할 게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호텔을 구한다든가 행사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비교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저렴하면서도 또 품격이 있는 행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이런 소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있지요, 현실적으로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현실적으로 사실은 다자외교를, 예를 들어서 G20 회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국가원수급이면 몇 성 호텔이 되어야 된다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서 호텔이나 이런 게 거의 동이 나기 때문에 비교하고 선택하고 이럴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약을 했다가 순방이나 이 자체가 캔슬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것을 중복적으로 해 놔다가 일부를 캔슬하고 일부를 살려서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비효율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차관님, 이것은 사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대통령실에다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인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한 바와 진배가 없기 때문에……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정상외교라는 것은, 어쨌거나 야당이 되면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외교부에다가 왜 취소했냐라고 물어볼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서 그런 점은 좀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너그럽게……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왜 취소를 했느냐고 물어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취소가 됐는데 문제는 거기에 집행된 예산액, 그 외에 환불·취소수수료…… 그런데 취소수수료는 또 지출액에 불과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고, 취소수수료 이런 부분은 아예 전체액 중에도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종욱 위원** 실제적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요, 실제적으로 지출을?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출 일부, 그러니까 취소수수료는 약정을 맺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행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종욱 위원** 행사도 안 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지출을 하지요? 제목을 취소라고 씁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사실은 호텔 잡고 여행 가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위약에 따른 일부를 부담하게 돼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밝히진 않고 총액은 밝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총액 전체를 행사별로 밝히지는 않아 가지고……

○**이종욱 위원** 행사별로는 못 밝히더라도 1년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는 밝힐 수 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정상외교 전액에 대한 것과 그것에 대한 집행은 저희가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밝히고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지적의 취지는 개별 건별로 말씀을 하시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덴마크 것 취소하면 덴마크 가려다가 안 갔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외교적으로 부담되니 그렇게 건별 공개는 안 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바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외교부는 취소된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의 계약 취소에 따른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러니까 환불수수료 등 예정된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정도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주의로 수용은 하셨는데 시정요구 문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시정 문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다만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설명하셨지만 예산만으로, 그 예산의 사용내역을 밝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기는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성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문제없지요?

○전문위원 주성훈 예.

○소위원장 유상범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통일부차관 김남중입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통일부 기조실장 구병삼입니다.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신혜성 기획재정담당관 신혜성입니다.

○통일부운영지원과장 이창성 운영지원과장 이창성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통일부에 대해서는 총 28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대상은 6건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통일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통일정책은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정책 수립·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국내외 통일인식 조사와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를 통일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환류체계를 마련할 것.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관련된 예산 자체가 올해는 없어졌고요. 작년까지 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제도개선 관련된 사항은 통일연구원에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차관님, 통일정책 추진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3억으로……

○소위원장 유상범 3억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2025년까지는 그 예산을 확보했고 2026년에는 예산이 사라졌습니까? 예산이 없어……

○통일부차관 김남중 내년부터 예산이 없어집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2027년부터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27년부터.

○소위원장 유상범 이걸 또 논란의 소지가 있겠는데……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게 통일연구원에서 같은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통일연구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같은 내용의 사업을 별도로 수행한다는 얘기입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중복된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동안에 통일부가 주관이 돼서 하던 사업인데, 그동안에 이걸 통일연구원 쪽에서 용역 같은 형태로 저희들이 수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를 통일부가 수행을 안 하고 통일연구원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소위원장 유상범 통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 안 하고 어차피 통일연구원에서 용역을 줬으니 통일연구원 사업으로 해서 수행을 하겠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도 통일부 예산 아닌가요, 그거 똑같이?

○통일부차관 김남중 통일부하고 통일연구원은 다른 기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몰랐네……

○통일부차관 김남중 통일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로 돼 있고 통일부 산하가

아닙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예산이 그쪽으로는 확보가 됐다는 얘기네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희 위원 제도개선으로 해서 넘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통일인식 조사라는 걸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매년 3억씩 하다가 금년까지 하고 내년 이후에는 통일연구원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으니까 통일연구원에서 그냥 같이 하는 걸로 하고 본부 3억은 없어졌다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통일인식 조사를 하고 돈이 3000만 원 든 것도 아니고 3억 원 들여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피드백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게 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책 반영은 했다는 걸 저희들이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여기 중국이나 미국, 일본 이런 지역에서 조사를 한 부분이기도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쪽 해 왔습니다. 저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쪽 해 오던 거고 조사비 3억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

주로 계량화되고 통계도 나올 수 있는 조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두루뭉술하게 그냥 반영됐다고 하기에는 통일부가 3억 원이라는 돈을 조사비를 쓰고 제대로 잘 관리를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을 하시겠다는데 저는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내용을 추가로 더 논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이 사안은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64페이지 연번 8번, 남북피해자 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남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에는 유엔·미국 등과의 협력, 한일 협력채널 구축 등을 위해 6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석방을 정부의 공식 대북 의제로 명시하고 국제기구 및 유관국과의 협력·공동 대응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통일부의 입장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유를 말씀하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남북관계 자체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북쪽에 남북자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대북 의제로 명시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자 문제에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다시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남북관계는 계속 경색되어 있을 텐데 어떤 다른 우회로가 있으신 건지?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내부적으로 남북자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남북자 문제는 역대 정권들이 조심하게 다룬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항상 북한과의 관계에서 모든, 1번입니다. 그런데 인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후순위에 두고 계속 조심스럽게만 다뤄야 될 사안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제도개선이지만 ‘즉각적 석방을 정부의 공식 대북 의제로 명시하고’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서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부분도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공식 의제로 하기에는 남북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좀 곤란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순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차관님께서 이 내용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들어오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방금 차관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공식 의제로 명시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은 차관님이 받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남북관계에 관련된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가 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분위기도 바뀔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이것들을 북한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호소적인 형태로 그냥 밖에다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문구를 수용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과 문구 수용과의 모순이 발생해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일단 이렇게 두 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김성희 위원님은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이종욱 위원** 그런데 이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 정부도 기본적으로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는 일곱 분 국민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국제공조 사업이잖아요, 북한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돈도 많지도 않아요, 6200만 원. 쓰려면 그냥 누구 1명 오라고 그래서 발표시키고 세미나 한 번 열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국제공조도 안 하고 돈이 62억, 620억도 아니고 6200만 원을 1년에 못 쓰고 600만 원만 소모품 구입비 했어요. 그래 놓고 무슨 국제공조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없다.

지금 장기 억류 일곱 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이 사업이 어디 북한하고 협상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기구·유관국과의 협력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국제공조 활동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는, 네트워크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연말에 한번 불러서 세미나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을 그것을 왜 집행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도개선 할 거리도 아니고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요구사항의 앞단은 사실은 없어도 돼요, 자신도 없는 것. 그 뒷단 부분 쪽은 제도개선이라기보다도 그냥 시정입니다, 시정. 의지의 문제지 이게 제도개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국제공조 사업인데.

○**통일부차관 김남중**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7명 억류자 문제 같은 경우에 예전에 6명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억류자로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엔인권이사회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이 문제를 저희들이 반드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도개선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제2회 6·25 남북자의 날에 차관님이 직접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도 남북자 문제 잊지 않고 대응하겠다는다고 성명도 발표하고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맞다고 봅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리고 남북대화가 재개가 되면 억류자 문제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김성희 위원** 같이 논의할 거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욱 위원** 하여튼 저는 시정입니다. 6200만 원 쓸 의지도 없는 분들이 무슨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정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대통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으면 명시적인 의제로 가는 게 맞지 않

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싹 빠지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므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고.

시정요구사항 문구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통일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우리가 소소위를 구성해서 진행할 때 문구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실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사안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66페이지입니다.

연번 10번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정책기조 변화를 이유로 북한인권 관련 사업 집행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및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인권정책이 상호 대체관계가 아니라 병행되어야 할 국가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권 또는 남북관계 상황의 변화와 관계 없이 북한인권 인식 확산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장기 북한인권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기조 변경을 이유로 예산이 대규모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인권정책 관련해서 ‘평화공존과 병행되어야 할 국가정책임을 명확히 하고’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내에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인 증진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포함하였고. 그다음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 북한인권정책 추진계획 수립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종합계획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나머지 예산 불용되는 사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2026년에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여기 지금 123억 중에 58억 썼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내역사업하고 섞여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123억짜리가 얼마 됐지요? 3억 7800 맞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이종욱 위원 3억 7800 맞아요? 큰 건물이 있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저희들이 북한인권센터라고 하는 건물을 지으려고요 준비를 했었는데 북한인권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건물로 짓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빼고 원래 123억 중에서 얼마였는데요? 지금 금년도 3억 7800에 해당되는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2025년에?

아니, 이상해서요. 120억짜리가 58억 집행하고 금년 예산이 3억 7800 돼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은 없다고 제가 본 것 같아서.

누가 잘 압니까, 차관님?

○통일부차관 김남중 저희가 지금 예산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이종욱 위원 차관님, 지금 결산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지금 숫자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북한하고 협상합니까? 우리 지금 결산하고 있어요. 예산 집행·불용·이월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말씀하셔야지.

○김성희 위원 아는 분이 읽으세요, 아는 분이.

○이종욱 위원 아니, 기본이잖아요, 지금.

○통일부차관 김남중 내년도 예산은 3억 4600만 원입니다.

○이종욱 위원 3억……

○통일부차관 김남중 4600만 원.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 설명해 보세요. 123억짜리가 정권 바뀌니까 3억짜리로 된 이유가 됩니까? 이제 북한인권 사업 안 하시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인권센터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것을 목표로 사실은 그전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제 북한인권센터를 짓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빠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억 4600만 원 정도로 남아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북한인권센터는 법률로 북한인권센터를 하기로 하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아니, 법률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않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북한인권…… 이사 추천이 안 돼서 재단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 부분은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기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것과 무관하게 다른 쪽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인권재단을 만약에 설립하게 되면 건물 임차 같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3000만 원 정도를 그냥 예비비 형태로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 그래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래서 인권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정부 때 만들기로 하고 123억을 반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인권센터 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작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 짓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북한인권센터와 관련된 기조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통일부차관 김남중** 북한인권센터 자체가 북한 인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외통위 상임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

○**이종욱 위원** 아니,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어쨌든 있는 자료만 보자고요. 123억이 있었고 그 안에 무슨 센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58억을 집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64억 불용됐고. 그 밑에 보세요. 내역사업이 있었어요. 16억짜리 내역사업이 있었어요, 16억짜리. 그런데 그거 2억 7000 썼어요. 그런데 16억짜리 이거는 건물 아니잖아요, 16억짜리 내역사업이. 다른 거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 하나만 봐도 16억짜리 내역사업이 없어지고 이제 3억짜리 사업 정도 수준만 이 정권 들어서 하는 걸로 바뀐 거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었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책 의지가 있는 거냐고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때 여기 반영됐던 16억 안의 내역사업은 번역사업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만들고 번역을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책자들을 번역하고 확산시키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던, 불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시는 말씀이고, 번역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번역할 일 없으면 보통 부처는……

○**통일부차관 김남중** 책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북한인권과 무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적절한 걸로 나눠서 번역하면 되지요. 아니면 이 돈을 다른 유사한 북한인권 관련 사업으로 바뀌도 되고. 그게 보통 공무원들의 일이잖아요. 있는 자기 예산을 줄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사한 다른 용도 가져와 가지고 더 키우면 키워지. 그러니까 이 정권이라든지 통일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북한인권 사업은 안 한다. 눈치 보지 마시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도 관련된 연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네트워킹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정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그런 걸 떠나서도. 그걸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일부 줄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통일부잖아요. 통일부 일이잖아요. 왜 억지로 부처 일을 줄여요, 없애고 예산 줄이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권에 따라서 색깔은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는 통일부 업무 아닙니까? 그런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쓸지 그걸 고민을 하셔야지 뭐라 그런다고 바로 그냥 없애 버려요, 100억짜리를 3억짜리로? 그것 말쑥드리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종욱 위원님께서서는 이걸 시정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종욱 위원** 예.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지요. 이게 북한과의 평화공존 문제와 병행돼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충돌하는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이것이 부각됐을 경우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평화공존과 북한인권 증진 이 부분이 같아야 된다는 그 기조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현실적인 북한인권 문제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추진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한다라는 아까 답변이 있었던 거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수용 가능한 그런 인권 정책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또 아동 문제라든가 등등의 뭔가 인도적 차원에서 인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정부의 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 자체를 계산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통일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남북 간의 인권 협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남북자·국군포로 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남북인권 협력이라고 저희들이 개념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통일부가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나가자고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부분은 접점이 생기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차관님 말씀은 통일부 차원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여기 내역사업 중에 보면 국제회의 참석, 외국인과의 관계 개선 이런 내역사업조차도 다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상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국제관계 협력조차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도개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 자체를 무조건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축소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가 제도개선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과는 많은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고,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67페이지입니다. 연번 11번,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조사결과 활용 예산액 2억 1400만 원 중 600만 원만 집행되었고,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기록업무는 계속 수행하면서도 2025년부터 북한인권보고서는 비공개로 전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기록 및 결과 활용 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충실히 수행하고 개인정보 및 정보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일관된 공개·활용 체계를 마련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조사·기록한 북한인권 자료가 국내외 정책수립, 국제사회 협력 및 역사적 기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공개, 영문 번역 및 국제사회 배포 등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하고 공개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국회에 보고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 자료를 공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진 게 2016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공개를 한 사례는 단 두 차례뿐입니다. 2023년, 24년 두 차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지금 북한인권기록 관련된 부분은 발간을 하게 돼 있지 발행을 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지금 북한의 인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알리는 게 북한에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독일의 잘츠기터(Salzgitter) 기록보존소와 같은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인권기록 보존된 부분을 공개하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에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통일부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인권기록 관련해서는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고 NKDB라고 하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북한인권기록을 계속 발간을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여기 요구하는 것을 제도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요구하는 것

은 공개인데 제도개선은 반대 얘기를 하시네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저희들이 북한인권법률에 충실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도개선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문구 수정안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문구 수정안은 저희들이 준비는 했습니다만 지금 제시를 할까요?

○**정태호 위원** 예, 해 보세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나눠 주세요. 준비한 문구가 있으면 빨리 나눠서 위원들이 빨리 보게 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거기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야말로 양쪽이 가장 첨예하게 철학과 북한관, 여러 가지가 다툼이 있는 부분이니
까 이 내용은……

말씀하실래요? 하세요.

○**이종욱 위원** 기록상 말씀드려야지요.

서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압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단순히 정부 홍보물이 아니고 공식 인권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한 공공 기록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북한인권보고서가 국내외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국제사회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이렇게 비공개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정보 접근정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권에 따라 이게 공개 여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차관님. 북한인권……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난 정부에서만 공개가……

○**이종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십시오.

북한인권법률에 충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23년, 24년 공개할 때는 북한인권 법률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다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잡아다가 다 처벌해야지요. 그 처벌조치하고 같이 하세요, 비공개랑. 그래야지 깨끗이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에 따라서 통일부가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했다가, 장차관만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그러면 장차관이 불러 주는 대로 문서 쓰는 겁니까?

통일부가 중심을 잡고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공개 사항이다, 아니다 중심을 잡아야지 정권 바뀐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제 와서는 북한인권법률에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요? 2023년, 24년에 공개했을 때 충실하게 안 한 공무원들 다 징계하세요. 이번 결산 때 다 징계합시다,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통일부차관 김남중**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법률인데, 그 이후에 공개를 죽 하지 않다가 지난 정부 때 2년 동안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발간만 하게 돼 있지 발행을 하게 돼 있지 않다. 이게 저희들이 정부 안에서는 기록센터에서 기록을 하고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무부로 기록들을 넘기는 형태로 정부가 할 일이 그렇게 돼 있고요. 공개 문제는

민간을 통해서 한다는 게 그 당시 법률을 만들 때 취지였고 저희들이 그 법률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발간을 한다는 규정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예는 없습니다. 공개 여부는 별개의 얘가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물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그게 마치 무슨 법률에 의해서 공개는 안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그렇게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지적할 수가 없네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법률에 공개를 하게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준영 위원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기록을 조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런데 조사도 하는데 2억 1400만 원 중에 600만 원만 집행됐다면 서요. 600만 원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조사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 건의를 하십시오, 폐지안에 저희가 동의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유엔에서도 휴먼 라이츠(human rights) 리포트 발간하는 이유가 뭡니까? 휴먼 라이츠가 침해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을 공론화해 갖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어느 아이가 가정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기록만 계속 한다고 그 사정이 나아집니까? 바깥에 알려야지요. 경찰에 신고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면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구타당하고 있다,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만 쓰면 사태가 해결 됩니까? 그냥 폐지하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부분은 민간에서 충분히 담당을 하고 공론화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록을 하는 절차 이런 부분은 정부가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압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은 분명히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게 정부인데 민간이 어떻게 공개를 한다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중간에 민간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같이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고 그중의 일부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민간이 조사한 내용을 임의로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일부 공개를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일부 공개한다는 것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공개한다는 건데 그러면 공개가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도 어차피 더 진행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 보류하는 걸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실래요?

○정태호 위원 제가 얘기해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라는 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공존과 인권에 관한 문제가 이중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듯이, 같은 거지요.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과 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모순되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라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지 뭐 하나를 어떤 절대적인 선으로 접근했을 때 이 문제가 풀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통일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보류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의견들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일단 시정요구유형은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결국은 정부가 2억 1400만 원 중에 60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숫자로 보여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조사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돼서는 저는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부분은 수없이 언론에 나왔고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그조차도 눈을 감아 버리면 우리가 실제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 심각하지요. 그런데 외교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호 위원 조사는 한다잖아요.

○소위원장 유상범 600만 원 가지고 뭘 조사를 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 탈북민이 들어오는, 북향민들이 들어오는 그 인원수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특히 최근에 탈북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원에 들어오는 인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그중에서 인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만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왔던 분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조사 대상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실제 조사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집행이 그만큼 줄었다 그런 취지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79페이지입니다. 연번 23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요구안도 제기되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통일부는 풍계리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피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 기조에 따라 피폭 건강검진 결과 공개 시점·방식 등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피폭 실태조사가 북한 핵실험이 주민 건강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조사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권의 교체나 대북정책 기조와 관계없이 조사 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익명화된 통계 및 연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공개 시기·범위·절차를 명문화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실시된 탈북민 피폭 실태조사의 연도별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 공개 여부 및 시점, 공개 범위,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전수점검하고 연도별로 상이한 공개가 이루어진 사유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안입니다.

요구사안은 탈북민 피폭 실태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감사고 감사대상기관은 통일부입니다.

감사요구 사유입니다.

2025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 탈북민 피폭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2025년 조사 결과를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있는 후에 공개하는 등 탈북민 피폭 실태조사 결과 공개 시점과 방식이 정책기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므로 2017년 이후 탈북민 피폭 실태조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 확정·보고·공개 시점, 공개 범위 결정 과정, 관련 법령 및 내부기준 준수 여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공개 제한의 적정성 및 국회 부대의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먼저 앞의 시정,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요청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서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간단하게 공개 문제에 대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처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피폭 실태조사는 조사 참여 그리고 결과 공개 모두 대상자의 희망과 동의 여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전체에 대한 공개, 공개 시기

같은 것들을 의무화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하거나 의무화할 수 없다는 점 고려해서 그 시정요구사항 문구 부분에서 ‘의무적으로’라는 부분하고 ‘명문화할 것’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분도 저희가 2017년 이후에 실시된 피폭 검사 결과는 국회하고 언론에다가 공개를 쪽 해 왔습니다. 다만 작년 것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이게 지금 국회의 부대의견을 붙일 때부터 좀 문제가 됐었지요, 차관님?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이종욱 위원 부대의견을 ‘통일부는 탈북민 피폭 건강검진 결과가 핵실험 영향의 규명에 활용되도록 충실한 데이터 공개를 전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25년……

○이종욱 위원 25년 부대의견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충실한 결과 공개를 전제로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부처에서는 동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래 놓고 사후적으로 추가 동의를 요구한다고 절차가 좀 지연됐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확인하는 과정에 절차가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 핑계를 대면서 지연하다가 결국은 금년 들어 7월 말에서야 뒤늦게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저희들의 문제 제기는, 사후적으로 결과 공개하기는 했습니다만 사후적인 공개만으로 국회 부대의견의 이행 지연 문제가 해소되었다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했을 때 국회에서 약속했던 그런 내용을 집행 단계에서 다 위반하고 배반하고 새로운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지금 발표한 것도 한 명, 한 명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결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정도 하면서 왜 또 추가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했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저희가 공개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것들을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참여할 때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받았고 어차피 이 부분은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종욱 위원 아니, 공개하는데 개인정보가 어디 들어 있어요? 뭐가 들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그 발표 자료를 보시면 여자 남자, 이름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는데 개인별로 거기에 대해서 개인 이력 같은 것들이 죽 나오고……

○이종욱 위원 그게 공개라고 하면, 그걸 보고 그 사람인지를 특정할 수 없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물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종욱 위원 특정이 안 되면 개인정보가 누설됐다고 할 수는 없지요.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하여튼 저희가 결과적으로 좀 늦어졌기는 했습니다만 이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이 걸려서 공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특정이 된다면 통일부가 공개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공개를 못 하지요. 그렇지요? 특정이 안 되니까 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좀 늦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그 샘플을 하나 위원님께 보내 주세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종욱 위원님께 좀 보여 드리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되어 있고요. 개인별로 저희들이 ‘개인 정보 공개 미동의’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여성 51세’ 이것만 가지고는 특정이 안 되지요. ‘여성 51세’가 염색체 이상 검사, 염색체 수, 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건별로 자세하게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회 단계에서 충분히 결과 공개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뒤에 차일피일 핑계 대면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또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마다 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공개를 했다가 또 그런 차이는 있네요. 2023년, 2024년은 2월, 3월에 딱딱딱 공개를 했네요. 그 외에 2025년에는 비공개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국회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7월 말에 공개하자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신의성실의원칙에 어긋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정보공개 핑계 대지 마시고 때 되면 바로바로 공개를 해 달라, 그게 저희들 시정요구입니다.

○김성희 위원 좀 여쭙볼게요.

25년 같은 경우에 4월 18일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는 26년에 하신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25년 4월이면 대통령선거 직전이네요. 그 당시가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인 거지요, 시기상으로?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누군가가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정부 내에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

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짐작이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언론 공개를 하셨던 거고요, 그 전에도 그랬고 2018년에 안 한 문제가 있었는데.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게 이 결과가, 실제로 이게 풍계리 주변이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풍계리 주변에서 피폭과 관련해서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가? 북한 주민들의 건강, 인권 이런 문제들도 같이 돌아보자고 하는 건데, 이거 대조군이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대조군 자체는 없고 일단 저희가……

○**김성희 위원** 이게 대조군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샘플을, 그러니까 샘플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피폭 인원들, 피폭을 당했을 걸로 추정되는 인원들의 나이나 성별 이런 것들을 랜덤으로 섞어서 적절하게 표본들을 추출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2006년도에 풍계리에서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계리 인근에서 그 당시에 살았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풍계리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 남쪽에 들어온 분들이 약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겠냐, 안 받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게 자발적인, 한 20% 정도가 받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김성희 위원** 당연히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거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참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조차도 대조군도 없이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신 결과를 그냥 막 공개하는 것이 저는 정부기관의 신뢰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이거 조사하고 나서 결국 피폭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봤습니까, 그 당시에?

○**통일부차관 김남중** 대부분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김성희 위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피검사자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거 계속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래서 17년·18년도에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두 번 조사를 했고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있다가 2023년도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한 일부 민간단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할 사람들 자발적으로 참여를 받아서 몇 분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저희들이 볼 때 별로 유의미한 결과가……

○**김성희 위원** 시키는 것을 시늉해서 하시는 것은 했는데 무슨 이것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과학의,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보면 웃을 법한 조사를 지금 해 왔던 거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약간 연관성 자체가 굉장히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7년·18년도에 하다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단을 했었던 거고……

○**김성희 위원** 여기 수정안이라고 뭘 만들어 오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까지 논의할 사항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보류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이 피폭 검사를 왜 하느냐? 탈북민들이 원해요, 자기가 자기 몸이 괜찮은지. 단순 신체검사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해요, 북한에서는 안 해 주니까.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알고 싶어요.

금년 공개한 거 보면 피폭 검사 59명 중에 26명이 최소 검출한도 이상 나왔어요. 제 생각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탈북민 말고 다른 분들 하면 이 정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유의미한 그런 조사냐? 과학적으로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조사받은 사람도 원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개를 해야지요. 개인이 식별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해 가지고 이런 게 있다, 다만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된다. 그것까지 같이 공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국회 부대의견을 약속까지 해 놓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정권마다 계속 했다, 안 했다 바뀌는 그 과정에 뭐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통일부 내에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같이 감사도 하자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저희들은.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북한의 탈북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검사 수락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신규 입소할 때부터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 가지고 요청을 하거든요.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도 잘 모집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어쨌든 원하는 사람만 한 거지요? 원하지 않는데 한 건 아니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잠깐 정리를 하면서 가 보고 싶은데, 총 다섯 차례 검사를 했나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정태호 위원** 그리고 그 다섯 차례 검사 다 원하는 사람만 한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정태호 위원** 자발적으로 원하는 분들만 한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모집을 하신 거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정태호 위원** 그런데 조사 결과 다섯 차례 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없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까지 처음부터 쭉 다섯 번 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거의 전부 다 없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정태호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다섯 번 다 공개를 했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2017·2018년은 문재인 정부 때였고 23·24·25년은 윤석열 정부 때였고. 그리고 정권마다 바뀐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다섯 차례 검사를 했고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고 다 공개를 했고. 다만 이 공개도 이분들의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상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었던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정태호 위원** 그런 건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다섯 번 정도 했는데도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면 이 조사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또 던질 수도 있는 거지요. 이때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면 과학적 그런 근거잖아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되돌아가면 결과적으로 이 조사를 계속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정·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정은 제가 볼 때는 다섯 번 조사를 했고 또 공개까지 했으니 뭘 시정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도개선을 하면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가 의문이고 더더구나 이걸 가지고 감사까지 가는 것은, 여태까지 다 원하는 대로 했고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고 공개까지 한 마당에 감사까지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조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예산이 매년 조사할 때마다 한 6억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6억 들어가는데 사실은 유의미한 결과가 그동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오히려 탈북민들의, 북향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종욱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네.

○**소위원장 유상범** 차관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2025년 조사하고 결과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공개해야 되는데 1년 이상 공개 안 하다가 2026년 7월에 공개를 했어요, 뒤늦게. 그 전에는 조사하고 2월, 3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공개를 통일부가 자의적으로, 또 내용도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하는 행태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 시정하라는 겁니다, 조사하시면. 나중에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어서 중단하면 공개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뭘 제도개선을 얘기합니까? 시정하셔야지요, 당연히. 지적 내용을 모르세요? 조사 다 했으면, 전수조사했으면 그걸 가지고 바로 즉시 정해진 요건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공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공개해 왔고.

○**통일부차관 김남중** 저희들이 공개를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25년 조사를 다 해 놓고서 26년 7월에 공개했잖아요, 기간을 들쭉날쭉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할 거면 정해진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지적을 한 거고,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공개를 하겠다 하면 즉시, 지금처럼 지연돼서 공개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말씀하셔야지, 의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 삭제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

요? 내용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그 오염수 문제로 전 국민이 수산물을 안 먹고 해서 그것 예방한다고 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5000억입니다, 1조 5000억.

그런데 울진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방사능 누출이 됐다 하는 게 났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 희망자만 조사합니까, 국민을요?

저는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핵실험이 되면 분명히 그 주변에 방사능 검출이 많이 되고, 후쿠시마에서도 그 지역 마을에 방사능 검출이 심하게 됐잖아요. 그건 전수조사하셔야지요. 그게 개인정보 동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탈북민들이 가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지. 그게 아닙니다. 트라우마가 있지요. 트라우마가 있는데 탈북민이 거기서 핵실험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 트라우마 일 번이 뭐예요? 나도 방사능에 오염돼 가지고 내 몸에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트라우마 아닙니까?

간단해요. 이 사람들 한국 사람 아니예요? 우리나라도 만일 어느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면 반경 1km, 2km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딱 정해서 거기 있는 사람은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동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동의가 없으면 못 하는…… 동의를 하는 사람은 한다는 사고방식은, 여러분이 탈북민에 대한 인권을 보는 시각이 나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 가지고 치료할 사람 치료해 줘야지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같은 사고가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을 하라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라고. 자꾸 동의받은 사람, 전체 800명 중에 오십몇 명만 가지고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말고.

탈북민에 대해서 그 상황이 되면, 우리 국민이면 다 했을 상황을 왜 거기는 동의를 받아서 하냐고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런데 이게 하여튼 저희가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하고 있고 검사 수락을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수락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핵실험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 지역을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 본인들이 살면서 건강에 이상을 느꼈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락을 한 거거든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요, 기준을 딱 정해서……

방사능이 몇 년 갑니까? 최소한 한 10년 가지 않아요? 더 가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의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주는 거지요, 동의받고 막 하면 귀찮아서 안 오는 사람도 생길 거고.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거기 내년도 예산은 제로 만들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아니, 6억이 똑같이 지금 반영……

아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6억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정부안 6억 해 놓고 국회에 와서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정부안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빼 놔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소위원장 유상범 예산도 뺐어요?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네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게 그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북한의 원전 능력이 1000배가 늘었다면서요? 2006년도에는 핵실험을 하니 안 하니 할 때고 지금은 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6년도에 하고 20년 뒤에, 지금은 합니까? 트럼프도 핵탄두가 몇십 개, 몇백 개 있다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2006년에는 우리가 긴가민가 했지요. 그렇지요? 그때 피폭검사 한 거하고, 지금은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없애 버렸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핵실험을 안 한 지 지금 굉장히 많은 시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종욱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차관님이 어떻게 알아요? 핵폭탄 제조 능력이 1000배가 늘었는데……

○통일부차관 김남중 핵실험은 안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안 한 거 확실합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소위원장 유상범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부에서 피폭이 될 수밖에 없는 핵실험장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이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을 전수 조사를 매년 해 주고 하면서 10년, 20년 추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므로 보류하는 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뒤의 감사원 감사요구사항도 결정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80페이지입니다.

연번 24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64억 1300만 원 중 34%인 55억 8200만 원을 불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주거 등 장기적인 자립·자활과 연계한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것.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한 200명 정도 초반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22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20억 원 정도 감액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입국 추세 같은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정착 중인 이탈주민의 경제적 불안상황 등을 고려해서 초기정착시설이라든가 지역적응센터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체계 관련된 예산 이런 것도 적정 예산 규모를 확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 말씀하셨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이 지적은 맞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자립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쪽의 내용은 맞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종욱 위원 장기적인 자립·자활과 연계한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것.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그런 내용입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제도를 재설계해 달라고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이지요, 차관님.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소위원장 유상범 예산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계속?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현재 들어오는 사람이 적는데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의 제도가 아니라 조금 더, 자활·자립 부분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본인들은 사실 그러고 나면, 초창기에 정착지원금 받고 나서는 사실상 그다음에 경찰에 넘겨 가지고 그냥 보안관찰인가 그것만 하지요, 점점?

○통일부차관 김남중 하나센터라는 걸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 북한민들의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재단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시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저는 향후 정책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건 차관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도 재설계를 하실

건데 적어도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 모양이네요, 이 부분은?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11월 예산심사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에 대한 답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결산소위 위원들에게 행정실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 시정요구 문건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제도 재설계의 방향에 대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위원장님, 부처에서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전문위원이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기획예산처에서 의견을 제시할 게 하나 있어서요.

○**소위원장 유상범** 어느 걸 말씀하시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72페이지의 장애가산금 지급기준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장애가산금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해서 지급요건을 완화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저소득 장애인연금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에 추가해서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낮은 게 북한이 탈주민 감소 등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지원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사업 효과나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등에 있어서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실은 이 건과 다음 페이지, 73페이지가 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구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게 저희 기획예산처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의견을 주세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저희는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정도면 저희들이 통일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하겠는데 현재의 기준을 명확하게 완화하라고 하는 명시적인 의견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어떻게?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통일부는 장애가산금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정도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통일부하고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남북하나재단은 빠지나?

둘 다 똑같이 ‘통일부는 거주지보호기간 중 장애 판정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말씀하셨나?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장애가산금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돼 있으니까 그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73페이지의 사업도 동일한 시정요구 내용이고 저희들의 의견도 동일합니다. 일반사회 정책보장 혜택을 받고 있어서 문구 조정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문구를 정리해야지 전문위원이 아무렇게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문구를 제안해 보세요. 이것도 거주지보호기간 내 신청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빼자 이거지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보호기간 내 제삼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 집행률’……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소위원장 유상범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얘기지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소위원장 유상범 하나 마나 한 얘기긴 한데, 이걸 내가 원하는 제도개선 방향이랑은 전혀 다르긴 하지만……

이게 갑자기 나왔는데 통일부 의견은 어때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기예처하고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렇게 문구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간 기획예산처 들어오면 문구가 이상해져요.

그런데 지금 기준을 갑자기 일반 기준과 달리 따로 정한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바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도 그러시니까 16항·17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유지하되 문구는 기획예산처에서 제안한 문구 내용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

무처 사무차장 박학민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정남수 운영지원담당관 정남수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두 분만 들어오신 건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실 김민정 결산 담당 김민정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는 총 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2건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자문회의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제22기 국내 출범회의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는 당초 3억 6600만 원이었으나 임차료에서 6900만 원을 세목조정하여 4억 3500만 원으로 증액 집행하였습니다. 국회가 확정된 예산 규모를 집행 과정에서 확대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향후 출범회의 예산편성 시 과업 범위와 소요 비용을 사전에 면밀히 산정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자문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국내 출범회의 예산 임의 확대 지양하고 자문위원 참여 제고 안건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을 요청하는데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결론만 말하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과업 범위와 비용을 면밀히 산정을 해서 예산 조정을 최소화하고 또 자문회의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참석률은 계속 줄어들고 참석을 안 하면 해촉을 해야 될 텐데 해촉은 안 하고 그거에 비해서 출연진·사회자 비용만 더 늘리고,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기 자문위원들 참석률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출범한 이후에 참석 전무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촉을 해지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안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2번 항의 실효성 있는 자문위원 관리 방안 필요에 주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수용을 하시고 이것을 시행하신다는 거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을 뭘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3번 국내 출범회의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면밀히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제도개선 쪽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배준영 위원** 글썽요. 그런데 자문위원 참석률이 50%를 계속 못 넘기지 않았습니까? 넘긴 적이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요 근래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회기하고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지금 참석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협조하는 일정을 미리 안내한다든지 하는 등의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글썽요, 믿음이 잘 안 가는데.

○**소위원장 유상범** 이게 지적인 게 뭐냐 하면요 3억 6600만 원에다가 6900만 원을 더 해서 4억 3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100% 참석을 전제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예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50%도 덜 참석을 하는 것인데 과거의 관행을 보면 제가 봐서는 매년 해도 50%를 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으로 충분한데 임차료 예산까지 끌어 써 가지고 편법으로 증액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어차피 인원당 얼마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목별로 일부 예산에 반영이 못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수용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좀 미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부안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법령이나 무슨 제도를 손볼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조정이 될 부분인데 그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이번에 기관에서 주의를 해 가지고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정도로 가야지 제도개선 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것 ‘열심히 불러 모으겠습니다’, 이걸 제도개선이 아니에요, 업무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시정요구유형을 주의 정도로 하고 여러분, 내년에도 이거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결정하고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93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부 소관 정책과제인 인식개선 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집

행하였는데 예산액의 상당 부분을 타 부처 소관 정책과제에 집행한 것은 사업 간 기능 중복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상 정책과제에 부합하도록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을 지역 기반 멘토링 중심으로 개편할 것,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을 지적하신 대로 인식개선이 아닌 또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활용한 그런 맞춤형 멘토링 위주의 사업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말하자면 민주평통의 예산을 통일부 소관의 사업에 해서 타 부처 사업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멘토링 사업이요, 이게 뭔지 좀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멘토링 사업이 자문위원들과 어쨌든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장에서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멘토와 멘티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현장 적응을 돕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배준영 위원 자문위원과 탈북민 간에 일대일로 뭘 어떻게 돕는다는 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주기적으로 적응하면서 인식이라든지 사회 적응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들어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일인당 얼마나 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멘토를 하기 위해서 멘토를 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대로 된 멘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 교육 예산이 27년에 얼마가 잡힌 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25년도에는 8억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중복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을 2억 정도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2억 조정이 내년 정부 예산에는 마찬가지로 또 지출 구조조정돼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지금 없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자체 협의회 내에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체 협의회 내에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차장님, 멘토링 사업으로 지원 사업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멘토링의 예산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신지 저는 못 알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저희들이 국가에서 직접, 저희 사무처에

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게 지출 구조조정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못 실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예산을 그런 데 쓰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자체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멘토링하는 데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글썄,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어쨌든 전용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주의는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너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지적사항을 읽어 드려야……

지금 멘토링 사업을 위한 통일공감 사업에 25년 예산에 8억 4000만 원이 편성됐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그다음에 민평통에서 멘토링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집행했어요. 8억 4000만 원 중에서 그것을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리고 그 돈으로 통일부 소관의 인식개선 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집행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것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예산을 이·전용했다는 얘기인가요? 뭐지요, 이게? 이것 지적사항을 어떻게 정리한 건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멘토링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썼습니까? 그러니까 8억 원 중에서 3억 6600만 원 시행은 맞잖아요? 그다음에 의견 수렴에 돈을 쓴 게 있고요 4000만 원, 정착·생활지원에 여기 3500만 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불용이 보니까 한 1억쯤 돼 보이는 거고 전체 실집행이 7억 6800만 원이고. 이것은 맞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저희가 지금 전체 8억 40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한 43.6%를 멘토링 사업에 집행을 했고요 39% 정도는 지적하신 통일부 소관 정책 과제인 인식개선 사업에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일부하고 중복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그걸 하지 않았고요. 인식개선 사업 말고……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잠깐 미안합니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멘토링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인식개선 사업은 통일부도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중복했다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통일부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통일부에서 시행했던 통일인식개선 사업 그런 부분하고 중복될 여지가 보이는 그런 사업에 집행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통일부 과제 인식개선 사업을 민주평통이 했다면 통일부

의 요청으로 민주평통이 대신한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통일부에도 이 예산 있을 것 아니에요. 통일부에 이것 예산 집행했을 텐데 통일부 과제 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써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내가 간단히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정태호 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원래 멘토링 사업은 그야말로 멘토·멘티를 맺어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8억 4000만 원이 편성됐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멘토링 사업에는 3억 6600만 원만 집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제도개선 요구가 나온 게 기목적 사업에 제대로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멘토링 사업을 더 내실 있게 해라라는 요구거든. 그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일부 입장에서는 3억 6600만 원의 멘토링 사업을 했었는데 그 수준으로 계속 갈 것인지 그 역시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평통은 지역 단위의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멘토링 사업을 위해서 멘토를 하는 것은 자문위원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문위원들한테는 여기 예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게 멘토가 무슨 활동을 하는데 돈 지원 안 하고 남아 있는 게 무슨 의견 수렴이고 생활 지원하는 건 이것 해 봐야 다 합해서 한 8000만 원 되고 멘토들한테는 어떤 비용도 지원이 없고 그러면 이 돈은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멘토링 사업은?

○배준영 위원 교육하는 데……

○소위원장 유상범 무슨 교육을, 멘토링에 무슨 교육이예요? 멘토링하는 것은 그걸 주는 건데 이 예산이 도대체 실제로는 어디다 쓰였어요?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짜리 교육 사업을 30회 개최하고 거기에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모셔서 우리 탈북자들에게 이런 이런 내용을 해 주면 좋다, 멘토로서 이런 이런 걸 하라라는 강연을 하셨다는 애가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워크숍……

○김성희 위원 워크숍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김성희 위원 30회.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억 6000이니까 회당 1200만 원 정도 들었겠지요. 그렇지요?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30회의 워크숍을 자문위원들과 했다는 얘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김성희 위원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답변을 따로 하세요, 그러면 아시는 분이. 그거 결산 몇 개 된다고 내용을 공부를 안 해 갖고 오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정남수** 탈북민 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로 지정을 하는데 공감 사업도 있고 탈북민 멘토링 사업은 민주평통이 특별하게 자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했고요. 통일부하고 중복된다 그래서 그걸 좀 축소를 해라……

○**김성희 위원** 그 얘기 하지 마시고 멘토링 사업 3억 6000만 원 30회를 뭘 하셨는지를 위원장님이 여쭙보시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정남수** 멘토링 사업은 각 지역에서 멘토링하는 자문위원들에게 멘토 참석할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 교육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탈북민하고 자문위원하고 멘토링할 때 일대일 하는 게 아니라 또 시도별로 다 모여서 같이 멘토·멘티 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사업들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렇게 그걸 30회 해서 3억 6000만 원 쓰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정남수** 예,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돈이 남아서 나머지는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인식개선 사업 이것도 50회 정도를, 통일부도 하지만 우리도 돈 남으니까 이것을 같이 해 보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을 50회 하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56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정남수** 예. 전체적으로는, 종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 56회 한 것도 똑같이 자문위원들 모아 놓고 워크숍이 됐든 강연이 됐든 이런 식으로 돈을 쓰신 건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정남수** 탈북민 대상 행사를 한 겁니다, 이분들은.

○**김성희 위원** 인식개선 사업도 탈북민 대상으로 한 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정남수** 예, 탈북민 대상으로 행사……

○**김성희 위원** 그래서 지금 민주평통 입장에서는 30회나 56회나 전부 다 탈북민들을 모아 놓고 했으니까 목적에 맞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국회에서 지적받은 거다 이런 거지요, 내용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정남수** 예, 중복이라고 그러니까……

○**김성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 돈이 지금은 0원이지요, 이번에 예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정남수**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 0원입니다.

○**김성희 위원** 내년 예산이 0원이니까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기반으로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정남수** 예.

○**김성희 위원** 그런 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최대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김성희 위원** 아니, 뭘 도와드리려고 해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저희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위원장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좀 화가 나려고 하는데 끝나는 와중이니까 정리하지요.

○정태호 위원 아니, 지역 단위에서 하더라도 3억 6600만 원이 집행됐을 때 그 집행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30회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서 이게 너무 적다. 그런데 이런 거지. 멘토링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도 검찰에 있어서 범죄 예방위원들에게 멘토링 사업을 합니다, 범죄자들. 그러면 일대일로 접하게 해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밥도 사 주고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멘토링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업 이름은 멘토링이라고 붙여 놓고 실제로는 그냥 자문위원들 모아 가지고 회의만 하는 사업으로 돈을 쓴 거예요. 워크숍 돈으로 쓴 거예요, 사실상.

그다음에 여기 국민인식개선 사업은 이걸 또 국민 인식을 개선하라고 그러니까 탈북민 모아 가지고 뭘 해 준 모양이지요? 탈북민 인식개선을 한 거잖아요, 통일부 건은? 더 이상 사업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 제도개선도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역 기반 멘토링 중심으로 개편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아마 예산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설득을. 멘토 사업을 하려면 이분들이 활동이 필요하고 지역마다 의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활동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재력가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돈 쓰면서까지 이걸 다 요구하기가 녹록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지원활동이 필요하니까 각 지역마다 탈북민 멘토를 다 형성한 게 몇 명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20% 정도는 활성화될 수 있게 예산을 좀 받는다 이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도개선 자체가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은 부분에서 주의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배준영 위원 그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8억 4000만 원이 1년의 예산이라면 차라리 이걸 나눠 가지고 탈북민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낫겠어요. 괜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면 자문위원들 불러 가지고 워크숍 하고 그리고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통일부 사업도 내고 뭐 이럴 바에야 이런 피 같은 혈세 8억 4000만 원에 이탈주민 정착 지원 한다는데 그냥 지원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오해해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요, 멘토링을 통한 성공정착 견인 그러면 차라리 지역에서 탈북민을 모아서 필요한 민원을 듣든가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걸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든가 이런 식으로 실질화 돼야지요. 이걸 괜히 모아 가지고 워크숍만 하고 끝나는 예산이 돼 놓으니까 아마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주의로 정리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태호 위원**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이 맞는 거지요. 이거 완전히 제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소위원장 유상범** 예산이 없단니까.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떤 제도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의미가 있는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정태호 위원** 주의로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민평통에서 멘토링 사업을 제도개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조언도 드렸습시다만 한번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을 모아 놓고 워크숍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각 지역의 탈북민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멘토링을 제외한 통일부에서 했던 인식개선 사업과 중복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필요한 예산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황당해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안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 문제도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또 논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도개선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의든 제도개선이든 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구는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민평통에서는 12월 예산심사가 개시하기 전까지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결산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됐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박학민** 예.

○**소위원장 유상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준비 좀 해 오시길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 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 김민철입니다.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창원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창원입니다.

○재외동포청아주러시아동포과장 이규현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장 이규현입니다.

○재외동포청동포경제지원과장 이경아 동포경제지원과장 이경아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는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2건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조달수수료 200만 원만 집행하고 3억 22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부처의 시정요구유형을 주의에서 가능하다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년 6월에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 정상 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합의 이후에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 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짧은 사업 기간이라는 제약 조건 속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는 없었으며 사전 준비와 설계 용역 유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설계 용역 입찰 전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부지 선정을 비롯하여 운영 방안 검토, 전시 방향 설정 등 충실히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10월 새로운 과가 신설되면서 동 사업이 이관되어서 사업 추진 기반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공사 및 전시관 설치 등 후속 일정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계획을 포함하는 박물관 건립 종합계획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러면 아직까지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지금 설계가 진행이 완료되면 올해 착공이 되고요. 이게 내년도에는 건설이 진행이 되어서 일단 건립은 27년 말 정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봐서 진행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지 선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어 왔고

부지 용역 설계도 몇 차례 설계 변경이 되면서 좀 지연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연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설계를 해서 올해 중에 착공이 진행될 거고……

○소위원장 유상범 설계했습니까?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예, 설계가 진행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 나라 사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정 때문입니까?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부지 선정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계속 좀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소위원장 유상범 어디서?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올해 설계는 완성됩니까?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예, 완성되고 착공도 이루어질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게 얼마 정도 규모예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총 사업비는 저희가 79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규모가?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규모는 건축 면적은 1467 스퀘어미터고요. 연면적은 2030 정도 됩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차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부지가 어디지요? 우즈베키스탄 수도 내입니까?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수도 내에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이라고 하는 기존에 지어졌던 건물의 후면 공터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여러 차례 부지가 왔다 갔다 한 모양이지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예, 그 안에 공터로 짓느냐 아니면 조금 더 우즈베키스탄들의 인접성이 좋은 곳으로 가느냐를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비 넣고 하면 최소 몇 년 전에 시작한 사업인데 아직 박물관 운영계획 이런 것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여기 와서 앞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너무 일이 지지부진하고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저희가 전시 유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걸 모으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 선정에 문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지 선정으로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설계를 연초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좀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한국의 디자인을 넣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설계가 몇 차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에 집중하느라고 전체적인 전시 계획이라는 것까지 아직은 못 했는데 일단 건물이 완성되면 박물관 전체 운영 계획도 그렇게 늦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종욱 위원 누구랑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지요? 우즈베키스탄 정부랑 아니면 우리 한인……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박 빅토르라고 하는 고려인입니다.

○이종욱 위원 고려인?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거기 고려인 유력 하원의원이신데요. 주로 그분하고 같이, 하지만 물론 정부 간 대 정부 간으로 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주로 말씀을 나누는 쪽은 박 빅토르라고 하는 고려인 현지 동포 정치가입니다.

○이종욱 위원 어쨌든 국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느리다.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설게도 지지부진하고 구체화되고 있지 않고 하여튼 여러 사업 일정 관리도 충실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아까 주의는 받으신다고 했나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이종욱 위원 제도개선으로 바뀌 달라요?

○소위원장 유상범 제가 판단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 내가 다른 데와 달리 어떻게 할 거냐는 하우(how)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확실히 좀 힘든 모양이지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그래도 많이 진척이 돼서요. 눈에 좀 보이고 있는, 부지 선정 이후로는 굉장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28억 원, 5억 원을 새로 넣어 주셨고 3억 원이 이월됐는데 그것도 내년도 공사비를 선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공사비도 선납을 해야 돼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예, 25% 정도 선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유상범 공사는 현지 업체가 하는 거고?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저희하고 같이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일부 공사 업체도 같이 저희가 좀 감리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소위원장 유상범 한국이랑은 많이 다른 모양이구나.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예.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부처의 요청에 의해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99페이지, 마지막 사업입니다.

연번 5번 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상시 비즈니스 네트워크 지원 사업 5억 8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못하였음에도 명칭만 달리한 사실상 동일 내용의 사업을 기존 내역사업인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개최에 편입하여 추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은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사업예산으로 임의 집행한 데 대하여 관련자를 주의 조치하고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유형 선택이 필요하고 정부 이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부처의 시정요구유형인 주의,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문구 수정도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원안에 ‘재외동포청은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사업 예산으로 임의 집행한 데 대하여 관련자를 주의 조치하고’라는 부분을 삭제해 주셔서 ‘재외동포청은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6년 예산부터 내역사업명을 세계한상대회 및 연계 사업, 그 연계 사업이 바로 상시 비즈니스 네트워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으로 편성해서 국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26년하고 27년 사업에서도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 예산안을 반영해 가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24년에 민주당 일방적 예산 삭감할 때 이것 일방 삭감됐구나.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게 함부…… 힘쓰지 마라니까. 딱 보니까 그러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희 위원 저도 세계한상대회 예전에 미국 살던 시절에 참여해 봤던 기억이, 이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세계한상대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인데 상인인 사람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코리아, 비즈니스맨 코리아, 코리아 비즈니스맨들이 여기에 모여 가지고 전세계 서로 네트워크도 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해서 서로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시 비즈니스 네트워크 지원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저희가 10월에 한 번 네트워크 대회를 하고 거기에 기업 전시회를 같이 붙여서 합니다. 그런데 기업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하고 저희가 일대일 매칭을 미리 해서 거기서 성과가 좋은 기업들과 바이어들을 나중에 10월에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발굴된 스타트업들을 10월 본대회에 출품을 시켜서, 출전을 시켜서 거기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사실은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다 10월 한상대회를 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상대회를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실제 기업인 매칭도 안 되고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 좀 폴로업도 하고 일일이 트래킹도 하고 해서 성과가 나느지를 봐라 해서 저희가 그때 24년 말 예산편성을 할 때 상시를 좀 제대로 해서 본대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키웠다가 이게 한꺼번에 안 되면서……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이, 이것을 안 하면 10월 본대회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하나로 붙어 있는 사업이나 다름없어서 사실은 그때 사정상 예결을 안 받고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해부터 25년하고 26년 예산편성할 때, 올해 예산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26년 예산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예 내역명을 바꿔 가지고 이것을 연계사

업이라고 해서 상시 비즈니스 대회를 아예 그 명칭 밖으로 빼내고 그것을 넣어 가지고 확실하게 국회에서 심의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 거지 그전에도 이게 그 밑에 내내역사업으로 들어 있었습시다. 그런데 24년도에 내내역사업으로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 드리지를 못하니까 아마 국회에서 지적받기를 이것 국회 심의 안 받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때는 마구 감액할 시기였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2026년에 바로 살리셨네, 같은 내용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 의견……

2024년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예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해서 의견대로 그냥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문구도 재외동포청이 요구하는 안 그대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정태호 위원 아니, 그래도 좀 바로잡고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 정부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지.

○재외동포청차장 김민철 그러니까 그게……

○정태호 위원 다행히 26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된 거지요. 그리고 현재 세계한상대회 및 연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정부안에 반영이 안 돼서 국회에서 반영을 요구했으나 당시 일방적 삭감 분위기에서 그냥 반영이 안 됐다 이거군요.

○정태호 위원 아니, 처음부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정부안에 반영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겠지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문구는 재외동포청이 요구한 대로 정리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한 내용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특히 결산소위가……

○이종욱 위원 예산은 얼마나 힘들까……

○소위원장 유상범 예산은 얼마나 힘들지 갑자기……

우리가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62개 부처에 대한 부처별 시정요구사항과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 동안 계속해서 결산 심사에 전념하시고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위원들께서도 계속 함께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심사가 보류된 사항, 감사요구사항, 부대의견 등 아직 심사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이제부터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나머지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간사 간 합의하였습니다.

간사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회 위원님, 국민의힘의 이종욱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보류된 사업과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태호 간사님과 제가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활동의 결과는 다음 회의 시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제2차관님,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정부 측 공무원들과 송수환 수석전문위원, 주성훈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밤낮없이 자료를 검토하신 보좌진 여러분들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와 경위분들,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을 잡은 후에 위원님들께 추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성회 朴芝源 배준영 유상범 이종욱 정태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주성훈

입법심의원 이재운

입법심의원 이윤국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임종수

관리국장 정상훈
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윤기천
관리비서관 이정도
대통령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윤기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차장 박학민
운영지원담당관 정남수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

재정경제부

제2차관 허장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국고정책관 허승철

교육부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의대교육지원관 장미란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기획조정실장 김정한
동북·중앙아시아국장 남진
개발협력정책관 강효승
의전기획관 조수진

통일부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기획예산처

차관 조용범
기획조정실장 김명중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국가데이터처

차장 이명호
기획조정관 양순필

국세청

차장 박해영

기획조정관 유재준

관세청

차장 박헌

기획조정관 한창령

조달청

차장 강성민

기획조정관 이형식

재외동포청

차장 김민철

기획조정관 직무대리 이창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석준

기획조정관 조영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이광호

사무처장 최수진

입시회의록